

제400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 5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12월1일(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9)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1)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61)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9)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26)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83)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9)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0)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0)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14)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0)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8)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9)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1)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3)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5)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0)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2)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2)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20)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4)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4)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8)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4)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1)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6)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1)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2)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3)
3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95)
3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06)
3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89)
3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78)

3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45)
3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7)
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89)
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66)
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3)
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중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5)
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7)
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5)
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4)
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3)
4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0)
4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56)
4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6)
4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9)
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0)
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3)
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92)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08)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04)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7)
5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17)
5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9)
5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5)
5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6)
5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2)
5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2)
6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5)
6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2)
6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9)
6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6)
6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8)
6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1)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9)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9)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3)
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9)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46)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7)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70)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1)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10)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79)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36)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34)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05)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5)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37)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67)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0)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5)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9)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4)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4)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5)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3)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9)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1)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0)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4)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1)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0)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1)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5)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9)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7)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1)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7)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4)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6)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5)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9)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9)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86)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07)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2)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0)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3)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0)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34)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1)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7)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52)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4)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2)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6)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3)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1)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4)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862)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9)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7)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1)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9)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1)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96)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1)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9)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6)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5)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7)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0)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2)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9)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2)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63)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3)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6)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0)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6)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5)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4)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0)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9)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0)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2)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7)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8)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1)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4)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9)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4)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2)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8)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7)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9)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7)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2)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3)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2)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2)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9)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1)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4)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1)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5)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1)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3)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5)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2)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1)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8)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3)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1)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2)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1)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1)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3)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5)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3)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3)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4)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5)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8)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6)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3)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2)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6)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8)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6)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4)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1)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8)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4)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6)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8)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0)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4)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1)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8)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9)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0)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2)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4)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9)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7)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8)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46)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5)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8)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4)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0)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1)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7)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2)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9)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2)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3)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0)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6)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6)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3)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5)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9)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56)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7)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44)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88)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02)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4)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20)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2)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1)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4)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7)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7)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7)
24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7)
24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6)
24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6)
24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8)
24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8)
2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01)
2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00)
2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18)
2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6)
2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92)
2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3)
2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7)
2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4)
2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62)

2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2)
2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4)
2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6)
2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6)
2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86)
2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1)
2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4)
2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3)
2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2)
2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4)
2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31)
2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47)
2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5)
26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1)
26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6)
2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8)
2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6)
2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1)
27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51)
27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57)
27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2)
275.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08)
276.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3)
277.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7)
27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04)
27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5)
28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3)
28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0)
282. 조세법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29)
283. 조세법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70)
28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5)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07)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48)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96)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89)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93)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36)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4)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18)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48)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2)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8)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00)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5)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8)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58)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81)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72)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2)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7)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80)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8)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0)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6)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0)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9)	
3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1)	
3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6)	
3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0)	
3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9)	
3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4)	
31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156)	

상정된 안건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07)	12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48)	13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96)	13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89)	13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93)	13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36)	13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4)	13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18)	13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48)	13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2)	13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8)	13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00)	13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5)	13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8)	13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58)	13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81)	13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72)	13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2)	13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7)	13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80)	13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8)	13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0)	13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6)	13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0)	13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9)	13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7)	40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70)	40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1)	40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10)	40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79)	40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36)	40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34)	40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05)	40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5)	40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37)	40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67)	40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0)	40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5)	40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9)	40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4)	40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4)	40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5)	40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3)	40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9)	40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1)	40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0)	40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4)	40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1)	40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0)	40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1)	40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5)	40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9)	40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7)	40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1)	40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7)	40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4)	41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6)	41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5)	41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9)	41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9)	41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86)	41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07)	41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2)	41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0)	41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3)	41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0)	41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34)	41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1)	41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7)	41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52)	41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4)	41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2)	41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6)	41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3)	41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1)	41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4)	41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862)	41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9)	41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7)	41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1)	41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9)	41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1)	41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96)	41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1)	41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9)	41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6)	41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5)	41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7)	41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0)	41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2)	41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9)	41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2)	41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63)	41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3)	41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6)	41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0)	41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6)	41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5)	41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4)	41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0)	41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9)	42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0)	42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2)	42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7)	42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8)	42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1)	42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4)	42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9)	42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4)	42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2)	42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8)	42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7)	42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9)	42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7)	42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2)	42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3)	42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2)	42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2)	42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9)	42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1)	42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4)	42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1)	42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5)	42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1)	42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3)	42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5)	42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2)	42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1)	42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8)	42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3)	42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1)	42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2)	42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1)	42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1)	42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3)	42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5)	42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3)	42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3)	42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4)	42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5)	42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8)	42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6)	42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3)	42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2)	42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6)	42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8)	43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6)	43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4)	43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1)	43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8)	43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4)	43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6)	43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8)	43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0)	43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4)	43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1)	43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8)	43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9)	43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0)	43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2)	43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4)	43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9)	43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7)	43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8)	43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46)	43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5)	43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8)	43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4)	43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0)	43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1)	43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7)	43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2)	43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9)	43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2)	43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3)	43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0)	43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6)	43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6)	43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3)	43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5)	43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9)	43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56)	43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7)	43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44)	43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88)	43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02)	43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4)	43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20)	43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2)	43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1)	43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4)	44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7)	44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7)	44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7)	44

(11시05분 개의)

○소위원장 류성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안건으로 합의된 조세특례제한법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07)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48)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96)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89)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93)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36)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4)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18)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48)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2)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8)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00)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5)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8)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58)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81)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72)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2)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7)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80)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8)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0)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6)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0)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9)

○소위원장 류성걸 의사일정 제285항부터 제309항까지 이상 25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제도 제가 산회 전에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소위원회의 안건은 심도 있게 심사를 하되 조금 속도를 내서 해 주시기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조세특례제한법은 특히 위원님들께서 대표발의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하되 속도감 있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호 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2권이지요?

○전문위원 김경호 예, 소위 자료 7-2권입니다.

○유동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소위원장 류성걸 예,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어제 같은 경우에 늦게 끝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제 좀 늦게 끝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을 내가 지금 막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그 회에 다룰 내용들을 미리미리 공지를 해 주셔서 검토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예, 알겠습니다.

어제 자료 전부 다 배포해 드리지 않았나요?

○전문위원 김경호 어제 저녁에 메일로는 다 보내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하드카피한 게 조금 늦었으니까……

○유동수 위원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오전에 몇 권을 다루고 오후에 몇 권을 다루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쪽대본을 보는데……

○소위원장 류성걸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 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7-2권을 심사하고 그다음에는 6권을 하겠습니다. 6권을 하고 그다음에는 7-1권을 하고, 나머지 심사하지 않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걸 심사하고 또다시 돌아와서 보류됐던 사항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건은 어제 저녁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저도 마찬가지로 마는 사실 하드카피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침에 늦게 하면서도 속도는 효율적으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7-2권 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감면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홍성국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는 70%의 소득세를 3년간 감면받고 있었지만 이를 청년과 같이 90%로 상향하고 감면한도도 기존 1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세후소득 증대를 통해서 경제적 약자인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2011년도에 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조세지출규모는 2019년에 6059억 원에서 2021년 8397억 원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1조 388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구직난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들의 취업 유인 제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면한도 상향은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완화해서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2000년 기준으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비율이 65% 수준이었지만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해서 2021년에는 55.1%로, 2010년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 조세특례 평가에 따르면 주요 정책대상자인 청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상용직 고용에 영향이 없었고 중소기업 임시직 중에 남성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청년 등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단지 임금격차뿐만이 아니라면 중소기업 취업 유인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

르면 대졸자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큰 요소로서 복리후생제도를 꼽고 있고 임금 또는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소로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오늘 심사하는 대부분의 안건이 정부안이 아니고 의원제출 법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 들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정부 의견은 부동의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현재 70% 공제율이면 다른 여타 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또 평균감면액이 지금 보면 94만 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150만 원이면 평균감면액 수준은 충분히 커버하는 부분일 뿐 아니라 이 제도가 총급여기준이라든가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면한도액을 올리게 되면 오히려 중소기업 부분에서도 굉장히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될 우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근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신동근 위원 어쨌든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일들이 참 어려우므로, 물론 미스매칭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처우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급격한 임금인상은 여러 가지 중소기업 자체에 부담을 주니까 세제혜택을 좀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한도가 너무 크면 이걸 좀 조율해서라도, 이게 나름대로 어떤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홍성국 의원이 발의를 하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절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지요.

전혀 여지가 없어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고광호 지금 150만 원 감면 수준을 급여로 따지면 한 5000만~55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인상하게 되면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더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존경하는 신동근

간사님 말씀대로 절충안이 있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하시고 다음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5페이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하고자 하는 류성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총급여액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2025년 말까지 가입하는 연 840만 원 납입한도의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분에 대한 농특세를 비과세하기 위한 농특세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일정 비율의 정부기여금을 지원함으로써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기한을 올해 말로 일몰 종료하는 대신에 동 개정안에 따른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의 적금상품인 반면에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의 투자상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청년들이 개인의 성향에 맞는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에 해당 상품의 출시 및 비과세 혜택 등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자산인 주식·펀드 등에 투자비중을 높일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 월 납입액을 40만~70만 원 정도로 정하고 있는데 월 40만 원의 최소 납입금액은 소득이 낮은 청년계층의 경우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21년 기준으로 청년들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34만 6000원 수준인데 저소득층 청년들의 경우에는 월 40만 원을 납입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이직이나 생활고 등으로 최소납입금액을 5년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동의합니다.

다만 전문위원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주식·펀드 같은 위험자산의 투자비중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하게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청년에 대해서는 사실상 6%의 저축장려금이 재정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0만 원을 납입하게 되면 1만 2000원 정도의 저축장려금이 지급이 되고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저소득 청년에 대해서는 특별히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청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인 배려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용진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지금 방금 차관님 얘기하셨는데,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청년들 자산형성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해당 상품의 출시 및 비과세 혜택 등으로 인해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자산인 주식·펀드의 투자비중을 높일 우려가 있다는 이 지적은 정확하게 누가 여기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투자한다는 거예요, 위험자산에?

○전문위원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적금상품이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금에도 들 수 있고 ISA처럼 일반 주식투자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청년희망적금 같은 경우는 적금이기 때문에 안전한데 이거는 주식도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위험 선호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고용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거지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이게 투자형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예금, 적금 같은 안전자산을 일정 비율 포함하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금융위하고 협의해서 상품 구조를 짜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신동근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신동근 위원 제가 사실 이것은 오늘 여기서 처음 접해 봤는데, 저는 오히려 관심이 있었던 게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일몰을 시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검토하면서 일몰이 되면 뭘 대체할 것인가, 그게 없어지는 대신에 뭔가 그만큼 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것을 아마 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게 투자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큰 부분일 텐데, 청년희망적금은 또박또박 적금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증권계의 무슨 로비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뒤에 3번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정성호 의원안인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 이자소득 이런 부분과 연계하든지 뭘 좀 해 줘야 하는 거지, 기존에 있던 것 일몰시켜 버리고 위험자산만 만들어 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득을 시켜 주셔야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게 위험자산만 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예금, 적금, 예탁금, 다양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특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자산 위주로만 하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특히 이런 지적들이 있어 가지고 금융위에서 보도 설명자료도 내고 했었는데요. 그때도 얘기하는 것들이 하여간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소위원장 류성걸 제가 발의했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여기 우려라고 돼 있는데, 우려는 할 수 있는 거지요. 어느 상품이건 금융상품은 사실상 원금 이하로는 내려갈 수 없지만 금융투자상품은 이하로도 내려가고 또 완전히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언제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려라고 표시한다면 금융투자상품 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까 배준영 위원님……

○홍영표 위원 저도 좀 얘기……

○소위원장 류성걸 아니, 배준영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유동수 위원님 하시고 홍영표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전문위원께서 지적할 만한 내용을 썼다고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과장돼서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7페이지 도표에 청년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별 금융재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일단은 그래도 금융상품 위주로 돼 있는데, 다만 이런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는 것 때문에 제도 전체의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전문위원님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답변이 ‘그것을 안전하게 운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은 아닌 것 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만들어지면 상품이 여러 가지가 나올 것이거든요. 리스크가 크면 리턴도 큰 거고 리스크가 작으면 리턴도 작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상품들을 본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정부에서 안전하게 리스크 없게 만들겠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유동수 위원님, 아주 전문가적인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영표 위원 저도 이 안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중소기업의 일자리 문제 또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이런 것들이 큰 사회적인 문제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보면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이쪽이 한 20%를 차지하고 나머지 80%가 너무 격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청년들의 기본자산을 형성해 주자 해서 내일채움제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 왔는데, 이것의 취지는 투자상품에도 좀 참여하게 해서 거기에서 이익이 나면 비과세를 해 주자 그러는 데요.

사실 부동산시장의 주력의 구매자들이 사오십대인데 작년, 재작년에 이삼십 대였어요. 그 사람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은행에서 돈을 차입해 가지고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했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안정돼야 하고, 투기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지를 아예 두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른 제도로 유도해서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작년에 우리 청년들, 신혼부부들 왜 집 못 사게 대출 안 하나 난리를 쳐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정부가 집니까, 우리 정치권에서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제도들도 있는데 그것을 더 활용해서 그런 위험요소 없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취지에서……

내가 위원장님이 내셔서 그렇게 크게 반대는 안 하는데 이것은 진짜 해서는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크게 반대를 안 하신다면 저도 적극 반대를 하시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 위원장님 안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성껏 열과 성을 다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주식에서 만약에 손해가 나면 그건 정부가 보전을 하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그건 아닙니다.

○장혜영 위원 보전을 안 하지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이게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제도적인 취지를 통해서 도입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손실이 날지도 모르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여기다가 5년이나 매달 40만 원씩 되는 돈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에 현실적인 조건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요.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5년 동안 월 40만 원씩 납부하는 것은 진짜 최저소득층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론 지금 청년들한테 자산형성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만 정부가 내지는 공적인 영역에서 나서서

이런 자산 기반의 복지라고 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게 가장 지금 최우선으로 되어야 되는 복지인가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를 얘기해야지, 개인이 자산을 쌓게 해 주고 그 자산을 통해서 개인의 복지수요를 충당하라는 방식의 이런 커다란 구조적인 접근에 대해서 저는 청년으로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이 기본 취지는 자산형성을 위해 지원을 해 드리면서 하자라는 건데 어떻게 금융상품에 초점이 안 맞춰지고 금융투자상품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서 하는 거니까, 그럴 것 같으면 투자를 없애 버리고 또 40만 원이 너무 높으면 20만 원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진선미 위원 짧게 질문 하나만……

○소위원장 류성걸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선미 위원 6페이지의 청년희망적금 관련한 일몰 법안과 이게 선택적인 건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위원장 류성걸 일몰이 되고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새로 생기는 겁니다. 예산으로 새로 생기는 겁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대체되는 겁니다.

○진선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일몰도 결정이 된 거예요?

○소위원장 류성걸 일몰은 그냥 놔두면 일몰이 됩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일몰을 연장하자는 안이 지금 우리 심의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여쭙보는 거예요.

○소위원장 류성걸 일몰이 되는 겁니다.

○진선미 위원 연장안은 안 들어와 있어요?

○전문위원 김경호 연장안은 김주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저희 심사자료에 없습니다.

○진선미 위원 심사자료에는 없고 올라와 있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김경호 의사일정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안 들어 있다고요?

○전문위원 김경호 예.

○소위원장 류성걸 그것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같은 취지의 기본적인 방향,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정성호 의원님이 발의한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 이자소득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5년 동안 5000만 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비과세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관련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적금입니다.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일단 정부 의견은 부동의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청년도약계좌하고 비슷한 유형의 것인데 이것은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고 제도 자체가 없는, 설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나중에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정일영 의원님과 김주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월세액을 분담하는 동거인에 대해서도 월세세액공제를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임차에 대해서 월세액 750만 원 한도로 10~12%를 세액공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안은 이번에 공제율을 15%까지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를 받고 싶은 자가 임대차계약자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서는 세대주와 가족관계가 없는 동거인인 근로자가 월세액 공제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령 해석에 따라서 주택임대차계약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거인도 별개의 세대로 보아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 세법상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으로 거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주계약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동거인은 월세를 같이 부담하면서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같이 한다고 했을 때는 신청절차 및 적용방법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거인의 월세 부담액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등에 동거인의 존재를 표기한 후에 월세액 입금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도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동거인이 같이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전혀 그런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인 간의 거래라고 하면 사실상 월세 분담하는지도 불분명하고 또 부당 공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이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양경숙 위원 이것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말씀드린 것처럼 동거인으로 해서 임대차계약을 같이 맺으면 지금도 월세세액공제를 받거든요.

○소위원장 류성걸 다 받고 있고 한테 사인 간의 진짜 사항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재정부제제실장 고광호 국세청의 법령 해석을 통해서도 동거인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주택임대차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집주인하고.

○유동수 위원 공동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인 간의 진짜 그런 사항들까지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13쪽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 초과액을 5년간 이월하고자 하는 김태년 의원님과 고용진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고용진 의원님 안은 해당 내용을 소득세법에서, 김태년 의원님 안은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공제제도하에서 월세액 세액공제가 후순위로 적용됨에 따라서 저소득·청년 가구가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제를 5년간 이월함으로써 주거비부담 완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월세액 공제 산출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제항목들의 선적용으로 인해서 결정세액이 0원에 도달함에 따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서 이월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현재 기부금에 대해 10년간 이월하고 있는 제도밖에 없어서 유사한 성격의 세액공제에 대한 이월 요구 또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고용진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고용진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고용진 위원 정부의 부동의 사유가 뭡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월세세액공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당해연도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의료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이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고 지금 당해연도만 하고 있어서 이 부분만 특별히 이렇게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러면 이 제도 자체가 어떤 대상을 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가요, 월세액 세액공제제도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중하위층……

○고용진 위원 그래도 여러 층이 있겠습니까만 저는 주 대상이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너무 폭넓고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들,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라든지 저소득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비중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되잖아요. 이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조세지출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까지의 실적어? 이 제도가 실제로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이것은 공제대상 금액이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 20년에. 인원은 한 50만 명 되고요.

○고용진 위원 몇 년예요? 그렇게 안 될 건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공제세액은 1400억 정도 되고요.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해서 청년들이 월세 등으로 굉장히 곤란을 겪으면서 실제로 소득이 없는 경우는…… 그리고 취직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월세세액공제 받지 못하다가 취직하면서 여러 가지 주거형태의 변화가 생기면 아무런 지원도 못 해 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소득수준이 낮으면 후순위 공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도 정부가 청년들의 도약을 돕겠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무주택·저소득 플러스 실직상태에 있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등등을 감안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당시의 어려움을 정부가 좀 챙겨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계층들이 충분히 세액공제를 잘 받고 있다면 굳이 이월공제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실제 그 대상들은 그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 상태를 넘어간다, 그러면 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소위원장 류성걸 유동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동수 위원** 고용진 의원님 안에 동의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점점 급여액이 올라가는 경우에 최초에는 급여액이 작아서 다 공제받을 수 없고 이월되지만 나중에 급여액이 올라가면 충분히 더 받을 수 있게 좀 열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본인이 신고할 것이고 행정에 큰 부담도 없을 것 같고 열어줘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인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정부가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월공제가 되는 개인의 비용 중 유일하게 있는 게 기부금인데 기부금은 어떻게든지 정부가 고액기부를 하계끔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월공제 가능한 예상인원이 한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 한 54만 명 중에서 2.2%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월세세액공제 한도 750만 원을 채운 근로자는 아주 극소수인데 그 소수의 고액 월세자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이런 성격의 세액공제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월공제를 해 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근로자가 나중에 주택을 구입했다든지 아니면 소득이 증가해서 고소득자가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5년 동안 이분을 공제해 줘야 되니까 무주택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한 월세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와는 상충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동수 위원** 서민·중산층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어제든 똑같이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는데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를 좀 키워 갈 필요가 있다, 지금 청년월가주택이라든지 역세권주택 이번에 분양하겠다고 하시지만 이렇게 월세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을 충분히 해 줘야 빛내서 집을 사서 온 국민들이 캐피털 게인(capital gain)을 얻겠다고…… 주택을 투자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요인들이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항목에도 계속 적용될 수 있는 이월공제 기준, 원칙을 정하십시오. 예컨대 법인세의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1년이라는 사업연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월공제가 지금 10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것은 연 단위로 정해져 있는 거라는 말이지요.

아까 기부금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세액공제 중에서 그 전제는 당연히 세액이 있어야 공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이월이 되고, 기부금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검토할 때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16쪽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소규모 사업자 등에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박홍근 의원님과 김주영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2건의 개정안은 지급명세서 및 매월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소규모 사업자 또는 이를 대리하는 세무사 등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홍근 의원님 안은 최대 연 500만 원, 김주영 의원님 안은 최대 연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매년 그리고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제출하게 되어 있고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상용근로소득은 반기별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경우는 매월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에서는 상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매월로 제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추가해서 이것도 매월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등이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게 됨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를 감안했을 때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업무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6년도의 경우에 개인사업자는 한 업체당 77만 원의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중에서 외부비용, 즉 대리비용이 34.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월 발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납세협력비용이 더욱 높아질 것이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제출 주기를 매월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

이 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지난번에 논의를 아주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형태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취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긍정적인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 의견 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어제, 그제 토의할 때 정부안은 세액공제를 건당 200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개인 세무사는 200만 원 그다음에 세무법인은 500만 원 한도로 저희가 제시를 드렸는데요. 좀 더 높여서 공제한도를 연 300만 원 그다음에 세무법인은 600만 원 정도 해서 수정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절충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정부안은 상용근로자의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분만 해당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상용근로자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상용근로자만.

○소위원장 류성걸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상세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양도소득세 분야입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20쪽입니다.

농어촌주택 등 요건 중 도시지역에서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제외하고자 하는 윤재갑 의원님과 성일종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특법에서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3년 이상 보유할 것을 전제로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2쪽 표에 현행과 윤재갑 의원님 안, 성일종 의원님 안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 의원발의안 내용 중에서 성장촉진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고려해서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정·고시하는 지역으로 현재 70개 시·군이 지정돼 있습니다. 성장촉진지역은 23페이지 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멸지역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등을 고려해서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현재 89개 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24페이지

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 개발구역이라는 것은 민간기업 주도로 투자·개발하는 기업도시의 개발을 위해 지정·고시하는 구역으로서 현재 충주와 원주가 준공돼 있고 태안, 영암·해남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위치한 주택들은 동 과세특례에 따른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개정안이 의도하는 바는 태안군·영암군·해남군, 3개 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중에서 지정된 읍면에 소재하는 주택들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 주택보급, 정주인구 창출 등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취지가 있겠습니다. 현재 기업도시 개발구역 전체의 토지분양률이 10.8%이고 주택부지 분양률이 1.2%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업도시의 분양률을 제고하고 기업도시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낙후 농어촌지역에 적용되는 특례를 도시개발을 위해서 예산이 집중되는 기업도시 구역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과세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에 종부세가 일부 완화돼서 3억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 특례를 두었기 때문에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보유 유인이 일부 제고된 바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가액요건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정부안이었으면 좋겠고요. 한옥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라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고, 지역에 대해서는 27페이지에서 전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과세형평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는 조금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신동근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근 위원 사실 지방소멸지역에 태안하고 영암이 해당되잖아요.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아마 기업도시를 유치해서 개발하는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분양도 잘 하고 유치도 하기 위해서 기업도시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름 자체를 잘못 쓴 것 같아요. 농촌지역인데 기업도시라고 쓰는 바람에 이게 농촌에서 배제돼 버리는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태안도 그렇고 영암도 그렇고 거의 6000억씩 투자를 해서 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분양이라든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은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좌초될 위기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게 잘못하면 다른 부분까지 바운더리가 넘어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마는 특정 부분에 한정된 부분이라면 유연성 있게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여지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저는 농어촌지역의 활성화, 개발 측면에서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미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선정이 돼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그리고 세제·조세 감면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양도세 비과세 특례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추가적으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법인세 분야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알뜰주유소 경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우대하고자 하는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이 정부안은 올해 3월에 제출된 안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개정안은 2022년과 23년에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알뜰주유소를 창업하거나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올해와 내년까지 소득세 감면율을 10%p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유소 운영업은 운송장비용 연료 소매업으로서 소기업은 10%, 수도권 외 중기업은 5%의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고 수도권 내 중기업은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와 농협이 정유사에서 대량으로 공동구매한 휘발유와 경유를 공급받고 부대서비스 등을 없애서 주유비용을 기존 주유소

에 비해 낮게 낮춘 주유소를 의미하고 있으며 2011년 말에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의 자영 주유소,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주유소 그다음에 농협의 농협 주유소,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21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125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주유소의 약 11%에 해당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정부는 알뜰주유소 도입 초기에 알뜰주유소 전환 사업자에 대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을 1년간 10%에서 20%로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알뜰주유소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통해서 알뜰주유소 신설과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고 인근 주유소의 판매가격 인하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정유사 상표 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연간 평균판매가격은 유종에 따라서 리터당 30~50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만 세액감면율 상향이 알뜰주유소 확대에 효과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뜰주유소 비율이 낮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높고 가격경쟁이 치열해서 알뜰주유소가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고 기존 일반주유소 운영자 중에서 알뜰주유소 전환을 원했던 사람들은 이미 대부분 전환을 완료해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알뜰주유소의 확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가 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의 취지가 있습니다만 지난 8월에 직접적으로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탄력세율을 50%로 확대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정부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유류세 인하했을 때도 효과를 점검해보면 사실은 알뜰주유소 측에서 가장 인하된 세수효과를 반영을 해 줬고 정부 정책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경준 위원님.

○**유경준 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33페이지 표에 알뜰주유소 전환 신청 및 승인 현황이 있는데 알뜰주유소를 이렇게 확대하고 싶은데 왜 전환율은 계속 하락 추이를 보이지요? 특히 2021년에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알뜰주유소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신청한 사람을 승인해 주는 것, 또 한국석유공사 심사에 따라 선정되는데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도 2021년에 승인율이 떨어진 이유가 뭐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소위원장 류성걸** 장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 저는 정부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일단 유류세 조치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국감에서도 짚었지만 지금 우리 경제위기 전반의 근본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그것이 재생에너지나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기인하는 문제가 큼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무리 알뜰주유소라고 하더라도 화석연료 의존을 더 고착시키거나 심화시키는 방향의 지원을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알뜰주유소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쪽들은 대부분 다 전환을 했다는 의견이 한국석유유통협회 그리고 한국주유소협회의 의견이니까 당사자들의 의견으로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지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지금은 이런 특별세액감면을 할 때가 아니라 기존의 유류세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시민들에게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책임 있는 보고서를 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감사합니다.

혹시 정부 측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화석연료 말씀하시는 건 지당하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고 특히 자동차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화석연료를 쓰는 차를 쓰고 계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소

비자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알뜰주유소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알뜰주유소는 이게 전환효과보다도,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줌으로써 알뜰주유소가 많은 부분의 공급에 있는 비율을 늘려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니까 전환율과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니까 전체 총수요라든지 그건 고정돼 있다는 전제하에서 알뜰주유소의 포션을 늘려 가자, 이런 취지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런데 장혜영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되면 전체 화석연료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그것은 별도의 정책으로……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아까 유경준 위원님 질의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간에 지금 엇박자가 나는 거지요. 예를 들어 기재부에서는 세제혜택을 줘서라도 알뜰주유소를 늘리고 싶어 하는데 석유공사는 지금 승인을 너무 안 내주고 그러니까 정부가 엇박자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인을 분석해야 이 법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렇게 하시지요. 왜냐하면 알뜰주유소 승인하고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고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유경준 위원도 말씀하시고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알뜰주유소가 신청은 많은데 왜 승인을 안 해 줬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그 자료와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에 대한 김주영 의원님과 조명희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성과공유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성과공유제 유형 중에서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하고 경영성과급을 수령한 근로자에게는 성과급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중 김주영 의원님 안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공제액을 20%로 상향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도 70%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성과공유제는 경영성과급 지급 등 일정한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서 36페이지 표에 있는 여섯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경영성과급이라든지 내일채움공제 같은 성과보상공제 그다음에 임금상승, 스톡옵션 부여 등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18년 2월 성과공유제 실시 이후에 성과공유기업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년 말 기준으로 5만 127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유형별로는 성과보상공제가 68.6%로 가장 많고 기타를 제외하고는 경영성과급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편 종전 시행령에서는 경영성과급의 지급범위를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해서만 하고 있었지만 2021년 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현재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서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해서도 동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을 통해서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을 유입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공유 도입 기업의 실적, 근로자 인건비 등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과공유제 도입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작년 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율이 종전 10%에서 15%로 상향되었으므로 추가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된 제도의 성과와 실적들을 반영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 말 개정을 통해서 24년 말까지로 연장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발생요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삭제됐기 때문에 입법 실익은 크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21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취지를 다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저도 21년도 개정으로 퍼센티지도 상향이 됐고 적용기한도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게 연장된 다음에 다시 평가해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42쪽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배준영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 가속상각을 허용함으로써 감가상각비를 조기에 손금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라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에너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경제구조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효율개선 투자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이고 신성장동력 분야이므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는 과감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서만 가속상각을 허용하는 경우 안전설비라든지 환경보전시설 등 가속상각이 허용되지 않는 다른 특정 시설과의 조세형평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정안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이 어떠한 시설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시행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화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먼저 배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우리나라가 정말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이고 지금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등 해외에 어려운 분쟁 사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어렵네요.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또 신·재생에너지도 그런 취지에서 정부나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신설하게 된 취지는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노후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노후한 시설인 경우에는 굉장히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44페이지에 나왔지만 1500개 기업 중에 64%에 해당하는 953개 기업들이 세액공제를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대한 애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분야에서 에너지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45페이지 아래 보시는 표와 같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제가 잘 들었는데, 한 가지는 조세형평성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안전·환경보전 시설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선순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개정안을 내게 됐고요.

그리고 에너지절약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를 보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호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고온가열장치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2호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 사용을 위한 시설 그리고 그 밖의 시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미진한 면이 있다면 시행령을 조금 보강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에너지절약시설을 산업 영역에다가 대폭 확대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배준영 위원님의 취지에 저는 200% 동감하는 바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가속상각 특례

까지 신설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다소비 기업, 2021년 기준으로 보면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제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대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들은 사실 우리가 에너지절약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원인인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고 있는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업 전환에 적응해야 하는 것은 정부가 시책으로 유도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 기업들이 스스로 저야 되는 책임의 영역이고 자기 생존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굉장히 많은 지원들이 이런 기업들에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에너지절약시설이 명확하게 규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속상각 특례를 또다시 신설하는 것은 저는 책임 있게,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준 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정부나 이쪽 검토의견하고 장혜영 위원님이나 배준영 위원님 말이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에너지절약시설을 예측할 수 없다 해서 시행령으로 포괄위임하자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그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알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전문위원 김경호**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령 무슨 무슨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앞부분에 열거를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열거를 좀 해 주자 이런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유경준 위원** 일단 저는 그 부분만 확인되면 이것은 시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찬반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전에 법인세 관련 부분까지 전부 다 심사를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46쪽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양경숙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까.

개정안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3년간 인건비의 30%를 세액공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면 2011년 13.6%에서 20년 24.2%로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이고 기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에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규정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세제혜택 제공을 통해서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처리방법을 살펴보면 계약직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빈도는 32.1%에 불과하고 남은 인력끼리 나눠서 해결한다는 비율이 54.4%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현재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장려금 형태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인건비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정안에 따른 대체인력의 세액공제는 대체인력 채용 후 3년까지 인건비를 세액공제하고 있지만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서는 복귀 후 1년까지만 인건비를 세액공제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공제가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양경숙 의원님 취

지에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게 작년 2월에 양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금년도부터 육아휴직 지원금이 재정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같은 취지가 이미 재정지출을 통해서 된 것으로 같음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신설돼서 아예 규정화되지는 않았잖아요. 법제화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무슨 대기업이나 큰 기업을 해 주자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근로자들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을 하고 대체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3년간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더 낮게 해서 15%의 세액을 공제해 주자는 건데,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의 질을 조금 더 높여보자라는 취지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굉장히 낮아요. 3%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여성 사용률은 6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한 여성들에게 조금 더 많은 세제혜택을 줘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을 해 주자는 취지이고, 현재 집행이 일부 된다 하더라도 법제화되지는 않았잖아요.

○소위원장 류성걸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법제화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경숙 위원 법제화되지는 않았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장려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렇게 하시고.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까 이렇게 하든지, 기존에 있던 것을…… 그러면 또 중복 지원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국은 기존의 것을 없애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검토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제실장 고광호 그리고 올해 통합

고용세액공제라고 개편을 하는데요. 거기에도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가 약 400만 원 정도 인상이 돼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 복귀자가 아니잖아요. 대체인력에 대해서, 복귀자는 당연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인력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 주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그러니까 재정으로 주고 있으니까……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니까 나중에 종합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5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50쪽 대한체육회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를 추가하고자 하는 고용진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100% 손금산입특례의 적용대상으로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종목별 경기단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선수단 및 국가대표팀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세법에 따라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이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100%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특례가 적용될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금액 전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어서 체육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고보조를 줄이면서 사정이 어려운 장애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체육단체의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가 54%밖에 되지 않으므로 나머지는 국고보조를 통해서 지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체육회 등은 체육진흥과 관련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서 현행 동 특례의 적용대상인 학교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등과 같은 고유목적사업과 비교할 때 고유목적사업의 공공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금산입 범위를 대한민국 선수단과 국가대표팀 활동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발생 여지가 반감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유는 뭐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이게 현재 교육, 장학, 병원, 사회복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공성이 높은 데들을 위주로 해서 100% 손금산입특례를 드리는 건데 대한체육회하고 회원종목단체…… 아마 주로 세금 내는 것들이 축구협회나 대한체육회 쪽이 많이 내고 나머지는 거의 세금을 안 내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사실 대부분 정부 지원으로, 특히 대한체육회는 95% 정도가 정부 지원으로, 보조금수입이 90%가 넘거든요.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특례를 드려야 되는지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용진 위원 대한체육회 등은 공익적 성격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공익적 성격이 있지요.

○고용진 위원 공익적 성격의 조직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고용진 위원 그래서 고유목적사업의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이미 현행 조특법에서 문화예술,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등도 고유목적사업의 공공성을 인정해서 이렇게 손금산입특례 100%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체육회 등 회원종목단체들은 재정자립도가 54%밖에 안 되고 나머지 국가보조금으로 하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손금산입을 100% 확대해 줘서 국가보조금 의존비율도 좀 줄이고 그러자는 건데 정부가 왜 반대를 하는지, 형평성 문제의 발생 소지도 없고 더군다나 이렇게 월드컵의 열기가 높은 시기에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크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소위원장 류성걸 세제실장님 답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체육단체 활동이 교육, 장학, 병원, 사회복지, 현행 있는 기관하고 공공성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체육단체는 자체 수익여건도 양호하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충분히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50% 손금산입에 추가해서 특례를 부여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진 위원** 아니, 왜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 것인지, 공공성 있는 비영리단체인데 왜 그것을 굳이 그렇게 끊어내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네.

그리고 이게 지금 재정자립도가 54%밖에 안 되니까 국고보조금을 자꾸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고용진 위원** 그런데 만일에 손금산입이 돼서 재정자립도가 좋아지면 국고보조가 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그건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진 위원** 확신할 수 없지만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특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체육회 산하의 대한축구회 등이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좀 해 주는 게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잘 검토해 보십시오,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16장을 가면……

○**고용진 위원** 16장 가면 하는 거예요?

(웃음소리)

○**소위원장 류성걸**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 장학, 사회복지단체와의 공공성 관련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전체 재정자립도가 54%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결국은 필요한데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다음에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유경준 위원** 제가 한마디 한다고 그랬는데요.

○**소위원장 류성걸** 미안합니다. 유경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경준 위원** 좋은 취지이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이걸 손금에 100% 산입시켜 주면 재정자립도도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면 정부 지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어떤 구조입니까, 이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준비금 손금산입은 과세이연 제도입니다. 나중에 고유목적사업

지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손금산입 한도 확대하는 것이 수익사업 소득을 확대하는 결과로 효과를 가져오기는 어렵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경준 위원** 그러면 정부의 지원도 안 줄겠네요, 결국?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유경준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유경준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나중에 안 되면 환입을 해서 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재정자립도 관련된 사항하고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55쪽 동업기업 소득금액과 결손금 배분 시에 수동적동업자를 예외에 추가하고자 하는 홍성국 의원님과 김병욱 의원님, 추경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즉 PEF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의 국내 원천소득을 일률적으로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지 않고 소득의 원천별로 과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PEF 관련된 제도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현재 현행법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 즉 파트너십 과세특례는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서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07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업기업 소득금액과 결손금은 동업자의 손익 배분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되 유한책임사원 등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5년 이내에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하고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업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각 소득원천별로 배당소득이라든지 주식양도소득으로 계산하여 과세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 단서에 따라서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원천별로 배분하지 않고 모두 배당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동적동업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있습니다.

기관전용 PEF의 수동적동업자 중 외국에서 설립된 연기금으로서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원천별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비과세·면제되는 연기금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차익을 원천별로 구분해서 주식양도소득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외 모두 비과세됩니다.

다만 배당소득으로 구분될 경우 국내에서는 배당소득세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외국 연기금 등이 국내 PEF에 투자할 때와 해외 PEF에 투자할 때의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PEF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동적동업자 예외를 2012년에 개정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PEF의 경우 외국 연기금을 제외한 다른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수동적동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해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들의 국내 PEF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외국 연기금을 제외한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PEF를 통해서 투자할 경우에 해외 PEF를 통해 투자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국내 PEF를 해외 PEF에 비해서 역차별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PEF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도 소득원천별로 과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PEF에 비과세하면서도 각 투자자에 대해서는 소득원천별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좀 상이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62쪽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에 투자할 경우 해외 PEF를 통해서 하는 것이 현재는 세제상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할 경우에는 국내 PEF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PEF의 수동적동업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투자위험도 투자한 만큼만 부담하는 소극적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PEF의 수동적동업자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다른 간접투자기구, 합자조합

이라든지 익명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소득 또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과세형평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식양도차익은 대부분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에서 과세되고 있는데 국내 PEF에 투자해서 국내에서 주식양도차익을 얻은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굉장히 복잡하고 관련되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작년 세법 조세소위에서도 이 김병욱 의원님 안이 논의가 돼서 결국은 그냥 계류하기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큰 틀에서, 마지막에 보시면 하여간 기본적으로 외국자본에 대해서 과세권을 포기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저희 정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용진 위원 차관님 지적이 맞기는 합니다,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할 것이냐의 판단의 문제이지요. 그렇지요?

애기가 김니다만 우선 글로벌 사모펀드하고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간에 지금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연기금은 괜찮은데 해외투자자들을 유치하려면 세제상 서로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글로벌 펀드는 사실상 비과세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국내 기관전용 펀드, 문제가 되는 이 PEF에 대해서는 과세가 사실상 배당소득으로 해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투자 유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기업 투자, 산업 혁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기관전용 펀드의 장기 민간자본, 모험자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게 전반적인 주장, 의견들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유치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2021년 10월에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 때문에 기관전용 펀드가 국내에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자의 범위가 굉장히 줄어든 거거든요. 이것 보완해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권을 어느 정도 상실을 하고 우리가 얻는 게 없다고 그러면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 유치가 글로벌 사모펀드에 비해서 뒤지지 않게 잘 들어오고,

더군다나 글로벌 펀드들은 잘 아시다시피 먹튀 논란 이런 게 있었던 말이지요. 그런데 이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국내에다 운용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장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약간 감안하면서도 역차별을 해소해서 투자 활성화를 해 줄 것이냐, 지금은 그러면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거든요. 지금은 그런 과세권에 약간 손실이 있더라도, 손상이 있더라도 투자유치를 활성화시켜서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것이고.

혹시 금융위원회 얘기 들으셨나요, 실장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자세히……

○**고용진 위원** 홍성국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도 개정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직접투자라든지 글로벌 사모펀드 이런 것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그렇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봐도 그렇고 이것은 개정안대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정부가 그냥 단순 논리로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 크게 좀 봐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복잡하지만 또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만 이것을 법적·제도적으로 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논의를 계속하되 금융위의 관계자를 꼭 모시도록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해외 사례의 경우에 저희처럼 동일 조건이었다가 지금 개정안처럼 비과세로 바뀌어서 실제로 투자율이 상승된 사례 자료가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하고 금융위 관계자 출석을 시키고, 관련되는 내용은 조금 전에 고용진 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 안 했을 때 지금 현재의 플러스마이너스,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64쪽 전자상거래로 공급받는 석유제품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자 하는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석유판매업자가 한국거래소에서 운영 하는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이용해서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경우에 세액공제 기간을 3년 연장하고 공제율도 0.2%에서 0.3%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제도는 KRX석유시장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세액공제를 도입했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정유사, 수입사, 대리점, 주유소 등 2000개가 KRX석유시장 회원 가입하여 있고, 주로 정유사와 수입사가 매도하고 대리점과 주유소가 매수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개설 초기인 2013년에는 국내 전체소비량의 6.1%에 그쳤지만 거래량이 계속 증가해서 2021년에는 국내 전체소비량의 15%가 KRX석유시장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석유제품 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쟁 촉진을 통해 국내유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2017년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KRX석유시장에서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구입한 주유소가 소비자가격 인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KRX 장내가격은 장외가격 대비 휘발유가 30원, 경유가 27원 정도 낮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정부 의견은 조금 이따가질의 과정에서 답변으로 듣도록 하고요. 위원님들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경준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유경준 위원** 전자상거래를 안 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이 왜 올라가지요? 무슨 리베이트나 이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전자상거래로 공급받으면 공급가액이 하락하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아무래도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면 유통구조가 개선되고 그다음에 석유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자 간에……

○**유경준 위원** 중간공급자가 없다, 그런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장외가격 대비 전

자상거래 가격차를 보면 작게는 한 20원, 해마다 좀 다르지만 크게는 한 5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유경준 위원**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지요, 쯤데? 하여튼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국내유가 안정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이 높은 우리나라 시점에서는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격 안정화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보다는 만약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유가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제는 세제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은 탈피를 해야 정부가 가지고 있는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커다란 방향성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찬반 관련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찬 전에 마지막으로 8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69쪽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관세 면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호영 의원님과 이원택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두 건의 개정안은 새만금특별법의 개정을 전제로 신설되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관세 등의 감면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2022년 11월 기준 새만금사업의 용지매립 현황은 전체 계획면적 중 41.9%가 매립이 완료된 상황이고 5.3%는 매립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새만금지역 개발을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새만금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겠습니다.

2018년 3월에 새만금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새

만금개발공사가 출범하고 공사가 공공 주도로 매립을 진행하고 추후 분양과 운영은 운영수익을 통해서 새만금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기업유치 활동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각종 다른 지구에 대해서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특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새만금지역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관세 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산업클러스터라든지 규제자유특구 등 세제혜택이 없는 다른 산업단지와의 형평성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정안은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신설 및 국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동 특별법이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새만금지역은 지금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있고 또 아직 새만금사업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현재 세법에서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새만금사업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국책사업입니다. 기대보다 진척이 늦어져서 일을 좀 가속화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높은 개발비용, 그러니까 간척지를 매립하는 등의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여건 및 위치 등으로 타 산업특구나 거점에 비해서 투자환경이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더 어렵고요. 도로나 항만, 공항 등 기반 인프라 구축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민간기업 유치 및 정주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의 불리한 입지조건은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한 새만금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세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과제 38번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에 새만금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조세특례는 기존에 필요성이 이미 인정되어서 사실상 특례가 되고 있는 군산 산업고용위기대응지역 특례를 연장하는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2023년 4월이면 그동안의 조세특례 지원이 사실상 끊기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장의 측면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보고요.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 전역을 대상으로 유망기업에 특례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한층 실효성이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가 되어야 조세특례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번 정기회 국토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돼서 법사위에 지금 올라가 있고요. 법사위에서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다루고 싶는데 조특법과 함께 병행을 해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특법을 기재위에서 통과를 시켜서 법사위에 보내서 같이 병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이 법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병도 위원 저도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예.

○한병도 위원 지금 쟁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이 상황이 쟁점일 것 같은데요. 이게 2020년도에 국토위에서 대안 처리가 돼서 올라가 가지고 처리가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거의 2년여 만에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건으로 상정을 하면서 여야가 상당한 논의를 했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이 될 텐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특법 개정 역시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한병도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동근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신동근 위원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는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 진행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든 지원책이 있어야 될 텐데, 어쨌든 제가 법사위 기동민 간사에게 물어보니까 12월 7일 날 이걸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새만금법은 보니까 원래 제58조 1항에 외국인투자기업 플러스 투자진흥지구, 투자자 및 입주기업 추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삭제했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걸 삭제한 새만금법이 통과돼 봐야 아무 실익이 없는 명목상의 법밖에 안 돼요. 그래서 조세특례 부분이 같이 결부되어야만 이게 말하자면 소기의 입법 취지가 달성된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이 상대적으로 투자가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 73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법이라든지 다른 기업도시법 이런 것과 비교하더라도, 저는 퍼센티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유연성 있게 하더라도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유경준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준 위원 이게 좋은 취지의 법이기는 하지만 세제혜택이 없는 다른 산업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된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참조하고, 그리고 현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고 해도 안 늦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저희 생각도 새만금법이 되면 기업이 유치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해서 세금을 내고 하는 문제는 사실 차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이 진행되고 나서, 먼저 기본법이 진행되고 나서 세법에 대한 것들이 다루어져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현재 이것들이 내국세 부분하고 관세 부분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관세 부분은 사실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관세를 좀 빼주더라도 물건이 섞이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데 새만금은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지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관세에 대한 감면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양경숙 위원님은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같이 심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는 또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새만금법이 미리 처리가 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관세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본회의 일정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본회의가 있다면 본회의를 하고 난 뒤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2시에 속개……

○신동근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저희가 의총이 1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장 류성걸 본회의에 관계없이 1시 반에 되도록 되어 있어요?

○신동근 위원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2시 반에 하는 것으로 하시고 만약에 본회의가 있으면 본회의 끝나고 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류성걸 예, 본회의가 있으면 본회의 산회 후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류성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특법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분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75쪽 초·중·고등학교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내용의 주호영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개정 전 법률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019년 말 법률 개정으로 초·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종업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 부가세 면제하던 것을 종업원을 제외하고 현재는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현재 학교의 구내식당이나 위탁급식을 통해 공급되는 음식용역의 경우 학생은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관계없이 부가세 면제를 받고 있고 교직원인 경우 위탁급식에 대해서는 다 과세를 하고 있지만 구내식당이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국공립학교 교직원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면제 현황은 그림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에서 국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직원 간에 조세부담이 불평등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급식은 일반적인 음식용역과 달리 성장기 학생에 대해서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직원에 대해서도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세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국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차등을 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 면제를 할 경우에 다른 민간 비영리단체에서도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세제실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실장 고광호 정부 입장은 부동의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 위원 부동의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제실장 고광호 전문위원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음식제공 용역은 일반적으로 과세지만 아주 열악한 사업장이나 직영

급식 용역에 대해서만 매우 예외적으로 면세가 돼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주장하는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의 형평성 문제는,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일반적으로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기 때문이어서 공급주체의 차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립학교가 교직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면세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다른 민간 비영리단체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79쪽 공공임대주택 또는 영구임대주택 수선유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고용진 의원님과 박대출 의원님의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들은 공공임대주택 또는 영구임대주택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을 위한 수선유지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해당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용진 의원님 안은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수선유지용역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박대출 의원님 안은 영구임대주택의 수선유지용역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구분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을 지원받아서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특법에 따라서 국민주택과 그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건설용역 그다음에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수선유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되고 있어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저소득층 서민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무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공공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공공주택 임대료는 현재 민간 시세의 45.1% 수준이고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민간 시세 대비 14.8% 수준입니다.

두 번째, 수선비의 증가는 임대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수선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거주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용이 2017년 4734억 원에서 2021년 1조 449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해서 수선유지비용의 증가는 임대료의 인상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도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해서는 2023년 말까지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또는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수선유지용역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국토부 고시에 따른 표준임대료로 책정되므로 수선유지용역에 대한 면세가 거주민의 임대료 부담 완화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고 실제 면세를 하더라도 그 면세혜택이 수선유지 사업자의 이윤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주거급여법에 따라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중에서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54만 가구, 공공임대 거주자는 50만 가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을 입법화하는 경우에는 적용기한의 설정 여부와 일몰기한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면제대상을 전체 공공임대주택으로 할 것인지 영구임대주택으로만 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세제실장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정부 의견은 부동의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유는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면세혜택을 임차인이 받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민

간임대주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난방용역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난방용역은 기초생활 필수 재화·용역 등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용역이나 경비용역, 청소 용역도 공동주택 거주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훈 위원 세제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사업, 영구임대주택사업은 대표적인 적자사업 중의 하나인데 수선유지용역비에 대한 비과세, 부가가치세 면제 부분은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번 고려해 봐야 할 대상은 아닌가요?

제가 질문하는 거니까 그냥 정부 측 입장을 한번 설명해 봐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LH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4조 원 이상 났습니다. 전전 대비 26%가 증가를 했고요. LH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수선유지비가 매년 17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 대비해서 수선유지비가 아주 적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작년에 이익 난 걸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방향을 좀 잘못 잡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때 표준건설비만큼 제대로 출자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책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파트 한 채 지을 때마다 한 2억 원이 넘는 LH 부채로 이어지고 있고 LH가 꾸준히 부채가 증가하는 요인들을 보면 정부에서 그만큼 충분한 출자를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 때문에 지난 국감에서 제가 LH 구분정리를 확실히 해서 주거복지 부분은 따로 매년 국가가 출자를 해야 되고 이익이 남는 부분은 배당으로 가져가고,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임대주택 관리에 LH가, 여기 공공임대주택 수선유지 예산 현황을 봐도 지금 실장님 말

씀하신 것이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계셔서 그런데……

저는 좀 크게 보셔서, LH에 대해서 이렇게 면세를 인정 안 해 주려면 LH의 출자금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반영도 안 하면서 이렇게 세제지원에 대해서 인색할 것 같으면 안 맞는 거지요, 안 맞는 거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품질이랄까 이런 게 되게 열악해질 확률이 있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세제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초생활 필수 재화·용역 등에 제한적으로 면세되는 제도를 그쪽에 적용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고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선미 위원 혹시 50년 된 공공주택 들어가 보셨어요? 한 번도 안 가 보셨지요, 임대주택?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가 봤는지 안 가 봤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 본 게 50년 됐는지 안 됐는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진선미 위원 지금 임대주택의 실제 현황이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도표로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 수선유지 예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느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안 해 주던 걸 열심히 수선을 해 주셨을 수도 있고 또 낙후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선해야 될 여지들이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서, 전체적으로 재정을 통해서 임대주택의 상황을 개선할 재정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유인책을 그래도 좀 써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이 정도라도 예산 투입을 못 한다면 이렇게 부가세 공제를 해 주는 정책을 통해서라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사업부문이 다르더라도 지금 LH 재무상황이 어렵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선미 위원** 뭐가 LH 재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재무상황이.

○**유동수 위원** 부채가 얼마인데 어렵지 않다고 얘기를 하셔.

○**진선미 위원** 모든 책임을 LH로 다 떠넘기시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이 문제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국가에서 해 줘야 될 것들을 그렇게 떠넘기는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개발이익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긴다고 몇 년 내내 아마 국회 전체 관련된 상임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자꾸 공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곳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류성걸** 신동근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신동근 위원** 작년에 국토위에 있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수리비 보다는 그냥 아예 헐고 다시 하는 게 돈이 덜 든다는 일부 조사도 있고, 그리고 LH가 말하자면 토지개발하고 거의 땅장사해서 남는 돈 가지고 사실 임대주택에 다 꼬라박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진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될 역할 또는 예산이 들어갈 부분을 갖다가 당신들이 거기서 효율적으로 돈 벌어 가지고 경영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그냥 말기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배려할 필요가 있고.

아까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과 민간임대가 차별이 된다고 그러는데 민간임대는 사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임대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걸 차별이 아니고 당연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차이지요. 그런 측면들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차관님, 혹시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세제실장님 답변하실 때 저는 세제실장님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세금을 가지고, 특히 면세 한 개 사항으로 임대주택 전체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내용들은 다르게 해결하시고, 세금 차원에서 봤을 때는 형평성은 이렇고 또 관련되는……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세금 관련되는 사항을 공공임대주택의 정책하고 연결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 버리면 초점이 흐려지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용진 위원** 민간임대와의 형평성 문제는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으니까 제가 긴 얘기 안 하고.

세수감이 얼마나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정처에서 2023년에만 230억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2023년이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고용진 위원** 전체 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전체 다 할 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아닙니다. 이 의원입법안만 했을 때……

○**전문위원 김경호** 영구임대만.

○**고용진 위원** 영구임대만 할 때도 계산이 저랑 다른데, 20년 말 기준으로 공공임대가 180만쯤 되고 장기공공이 한 98만, 영구임대는 1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연간 한 100억에서 100억 좀 넘는 정도 수준으로 보이는데, 저는 더 넓혀서 공공임대 전체를 하자고 한 것이고 박대출 의원님 안은 영구임대만 하자는 건데 영구임대만 하면 얼마 안 되지요. 그렇지요?

사실 우리 지역에 보면 영구임대뿐 아니라 이런 장기공공임대도 많이 있는데 거기서 주거환경이 열악하단 말이에요. 이게 수익사업도 아닌 비수익사업에 지금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요?

그래서 LH가 당기순이익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수선유지비용에 쓸 여력이 있다, 그렇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부가세를 면제해 주면 향후 LH의 이런 수선유지 관련해서 우리들이 충분히 그만큼, 어떤 세제혜택을 받은 만큼 또 강력하게 감독도 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히 어려우시면 영구임대주택, 박대출 의원안이라도 받으셔야 돼요. 작년에도 정부가 부동의를 해서 안 됐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장님? 세수감 안 크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박대출 의원님 안이 5년간 700억입니다.

○고용진 위원 아니, 우선 한 해에.

그렇게 따지면 10년은 얼마예요? 왜 갑자기 5년만 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아니, 여기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간으로 보면 크지 않고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 저소득층 주거안정 목표 이렇게 한단데 이런 것이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지요.

검토해서 다시 한번 답 주세요.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내용 전체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특히 나중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부가가치세라든지 또 세금이 면제되었을 때 그 효과에 대해서 특히 수요자 입장에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수요·공급 곡선의 탄력성에 따라서 그만큼 다 혜택을 못 봐요. 그렇지요? 결국 가격을 올린단 말이지요. 가격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치 면세가 되면 면세되는 그만큼 그대로 가격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 포함해서 전체 정리를 해 주십시오.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잘 지적하셨는데요. 실제로 수선용역 하다 보면 다 입찰을 하게 돼 있잖아요, 실장님? 입찰을 하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유동수 위원 LH가 무슨 수선하는 전문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입찰하게 됩니다. 외주를 주면 거기서 부가가치가 면세되기 때문에 그만큼 저가 입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민간임대하고 비교하는데 민간임대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민간임대 전부가 8년, 10년 임대하다가 분양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임대나 이런 부분에 불이익이 있는 부분을 10년 임대하고 8년 임대 이후에 다 한 번에 분양 이익으로 챙기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국민임대규모 이하에 대해서 설계·시공·감리·관리 용역까지 다 면세해 주고 있잖아

요. 그런데 굳이 이것만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논리가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아니, 저는 면세 제도를 가지고 특정 기업의 재무구조나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유동수 위원 아니, 이게 특정 기업이 아니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LH가 또는 지방의 공기업들이 공공임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의 품질의 문제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수단을 가지고 해결할 문제이지 면세제도를 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면 다른 수단을 기재부에서 항구적으로 마련하기 전까지는 이렇게라도 해 줘라 그거예요, 조특법으로.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세제 관련되는 건 세제만 말씀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한 개 가지고 전체 임대주택정책에 관련되는 사항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임대하고 영구임대하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것 정리를 해 주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김태년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용역, 이를 송객용역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송객용역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면세점사업자 또는 여행사 등의 관광사업자가 지급한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가 거래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전용 송객용역거래계좌를 통해서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면세점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받은 후 국세청에 바로 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조특법에 따라서 금 관련 제품과 구리·철 스크랩 등의 거래에 대해서는 동재화를 공급받는 매입자가 직접 부가세를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도록 하는 매입자 납부특

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는 매출자 거래징수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부가세를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크랩 등 법정품목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송객용역 거래의 투명화와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양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입법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국내 면세점의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면세점 구매를 알선하는 여행사 등에게 송객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형 여행사와 하청계약을 맺은 하위 여행사가 관광객을 면세점에 유치하는 연쇄적인 거래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 여행사가 부가세 탈루를 위해서 고의적으로 폐업 행위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행업은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점에 해당 여행사를 폐업하고 이후에 다른 여행사를 설립해서 관광객을 송객하는 등 탈세 유인이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매입자 특례제도 도입에 따라서 추가적인 납세자 협력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자가 6개월마다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만 매입자 납부특례를 시행하게 되면 매입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게 돼서 매출자가 자금 부담을 겪을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전용계좌 개설, 미사용 시 가산세 부과 등에 대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행 제도상 금 관련 제품 그리고 구리·철 스크랩 등 특정 재화에 한정해서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재화와는 달리 특징이 곤란한 송객용역까지 매입자 납부특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부동의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우선 면세점 송객수수료에 대해서 혜택을 주려면 법적 정의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실태 파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문위원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자칫하면 면세점업계와 여행업계 간에

갈등구조가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태 파악과 여론 수렴이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부가가치세제가 도입된 게 1977년입니다. 1977년 이후에 지금까지 부가가치세의 큰 틀은 당연히 매출자 납부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IT를 포함해서 거래환경이 매우 달라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부가가치세 매출자 납부제도가 근본적으로 매입자 납부제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본인 생각입니다. 수년 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때 처음 시작이 됐던 게 금 스크랩입니다. 그런데 자꾸 대상이 확대돼서 많은……

지금 여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김태년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이것도 사실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세제실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매출자 납부제도 원칙을 매입자 납부제도로 하고 관련되는 사항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서야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고요.

○소위원장 류성걸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신용카드라든지 전체 매출액을 보면 한 1342조, 그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상당 부분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그렇게 되는데 굳이 이것을 매출자가 따로 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짧은 순간에 바로 계정이 분리가 돼서 납부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환경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이 부분은 김태년 위원님 의견 포함해서…… 과거에 안 됐던 게 조금씩 조금씩 금 스크랩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품목으로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은 그런 문제점도 있을뿐더러 환경도 바뀌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수소생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 면제하고자 하는 박완주 의

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수소생산용으로 사용하는 천연가스(LNG)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

천연가스의 경우에 용도에 따라서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에 차이가 있는데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시행령에 따라 발전용 중에서 열병합발전용인 경우에는 kg당 8.4원, 발전용 외의 산업용 등에 대해서는 kg당 42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개정안 발의 당시, 즉 2021년에는 발전용 연료전지에 대해서 kg당 8.4원의 세율이 적용됐고 차량충전용 수소에 대해서는 kg당 42원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93쪽입니다.

수소의 생산원가를 절감함으로써 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정책 및 수소경제 활성화정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적절한 세제지원을 통해서 연료전지 분야 산업을 활성화하고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천연가스의 범위에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추출설비나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추가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용도에 관계없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는 kg당 8.4원의 세율이 적용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에너지원 간 과세형평성, 온실가스 배출수준 등을 감안해서 면세가 아닌 낮은 세율, kg당 8.4원을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부동의입니다.

이유는 전문위원이 마지막에 지적한 대로 작년 조세소위 통해서 이미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그린수소가 아니고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수소이기 때문에 지원의 타당성도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저도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입니다.

정부 측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수소는 그린수소가 아니라 그레이수소라고 얘기하는 이산화탄소를 부산물로 발생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후위기대응 목적으로 수소전환을 하지만 이 방식 자체가 다른 한편으로는 기후위기를 더 가속시키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7)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70)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1)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10)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79)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36)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34)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05)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5)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37)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67)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0)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5)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9)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4)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4)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5)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3)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9)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1)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0)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4)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1)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0)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1)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5)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9)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7)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1)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7)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4)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6)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5)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9)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9)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86)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07)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2)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0)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3)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0)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34)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1)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7)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52)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4)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2)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6)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3)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1)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4)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862)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9)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7)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1)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9)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1)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96)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1)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9)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6)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5)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7)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0)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2)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9)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2)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63)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3)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6)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0)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6)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5)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4)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10)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9)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0)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2)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7)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8)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1)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4)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9)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4)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2)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8)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7)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9)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7)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2)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3)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2)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2)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9)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31)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4)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1)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5)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1)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3)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5)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2)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1)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8)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3)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1)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2)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1)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1)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3)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5)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3)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3)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4)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5)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8)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6)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3)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2)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6)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8)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6)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4)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1)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8)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4)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6)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8)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0)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4)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1)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8)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9)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0)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2)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4)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9)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7)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8)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46)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5)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8)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4)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0)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1)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7)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2)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9)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2)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3)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0)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6)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6)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83)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5)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9)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56)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7)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44)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88)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02)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4)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20)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2)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1)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4)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7)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7)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7)

(15시13분)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부터 239항까지, 이상 169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건 책 6권이지요?

○전문위원 김경호 6권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6권은 참고로 어제 간사 간 전체적으로 일람을 한 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1쪽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하고자 하는 의원발의안과 정부안 등이 있겠습니다.

의원발의안 중에서 전재수 의원님 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면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있고 정부안은 수도권에서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업종·규모·지역별로 차등해서 중소기업이 납부할 세액의 5~30%를 감면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 관련 지원세제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 제도의 조세지출규모는 2021년 실적치 기준 약 1조 9500억 원 수준입니다. 활용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업당 평균 수혜금액은 대체로 일정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쪽 적용기한 연장에 관련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부분적으로 인정되지만 동 제도로 인해 기업의 재무성과 및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등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우선 정부안은 수도권에서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제도는 2001년 제도 도입 이후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20여 년간 세제상 특혜를 받아 왔으므로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 개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전재수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요건을 수입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완화하고 종합소득금액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의료업은 고소득 업종으로서 기준 완화를 통한 적용 확대는 제도적 취지에 반한다는 측면이 있고 세무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 서비스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는데 가·나·다, 3건 각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우선 첫 번째, 적용기한 연장은 다른 것과 같이 동일하게 3년 연장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지식기반산업 경영하는 것은 저희 정부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안대로 수도권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감면을 폐지해 주셨으면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감면요건에 대해서는 부동의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부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이미 공익성을 가진 조금 영세한 의원에 한해서 저희가 예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하에서도 보면 상당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출액 5억 원 이하 의원급 기관의 비율이 한 55%에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무사, 회계사 같은 직종하고도 비교를 하게 되면 그런 직종은 감면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다른 전문 서비스직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홍영표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9쪽입니다.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의원님 안과 정부안이 있습니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농어촌·농어업인과의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신용보증기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자산 무상임대 시

유형고정자산 장부가액의 3%를 공제하고 있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를 세액공제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중고자산을 교육기관에 기증하는 경우 세액공제하는 양향자 의원님과 정부안에 대해서는 산학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우수기업의 납품대금 조정 시에 세액공제하고자 하는 이인영 의원님 안은 상생협력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납품대금을 조정한 경우에 그 조정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은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산업위 소위에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첫 번째, 반도체 관련 중고설비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신설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납품단가 조정제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중위에서 논의 중인데요. 전반적으로 납품조정제도 도입을 법상 의무사항으로 했고 예외적으로 몇 가지 경우에만 당사자 간의 동의나 이런 걸 통해서 안 하도록 돼 있는데,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의무를 어길 경우에 그 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세액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에서 공제율이 해당 자산 시가의 10%, 높지 않나요? 다른 공제율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기획재정부제실장 고광호 이게 상생협력 목적 기금출연하고 동일한 혜택입니다. 상생협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렇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소위원장 류성걸**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한도가 없는데 그냥 되도 돼요? 한도가 없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상생협력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한번 보십시오. 특히 이렇게 됐을 때 중고자산이기 때문에 중고자산에 관련된…… 물론 중고자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목적은 있는데 중고자산을 처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 먼저 이렇게 중고시설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것이 실제로 산학 공동연구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전적인 조사자료가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지난번에 저희가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서베이를 했었는데요. 서울대학교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수도권에 있는 반도체들이 기계가 없어 가지고, 설비가 없어서 제대로 실험도 못 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장혜영 위원** 그러니까 관련해서 그런 주장이 있고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사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러면 무상기증을 할 때 자산의 시가 평가방법이랑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시가 평가는 법인세법상 기준이 있습니다.

○**장혜영 위원** 그리고 우리는 이걸 실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기대를 하면서 이런 안을 만들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이 대책을 수립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아닙니다. 기업은 사실 중고로 파는 게 이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증을 통해서, 반도체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기증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작은 대가로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업에 그렇게 혜택이 된다고나 그런 건 아니고 정말 필요에 의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장혜영 위원** 저는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작은 혜택인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무상으로…… 사실은 이렇게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무상기증이라고 불러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만약에 그렇게 기증받는 것이 필요하다면 법인세 10% 공제 말고 다른 방식은 없는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신중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용진 위원** 저는 동의를 했는데요,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예측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인세법상 평가기준이 그래도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있다면 기업이 교육기관에 이런 것을 기부해서 연구용으로,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준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저는 더 크다고 봐요. 모든 세제들이, 많은 세제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클 것이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아마 소수에 그칠 것이고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제도나 감독을 통해서 걸러 내거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설사 그런 게 좀 있다 해도 긍정적 효과가 크면 이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잘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장혜영 위원님 걱정 사항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사항 다 해소하는 걸 전제로 해서 잠정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장혜영 위원** 해소가……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와 그 관련되는 사항을 충분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음 항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13쪽 R&D 세액공제와 통합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상향하고자 하는 의원발의안들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19쪽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현황입니다.

법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일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그다음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일반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당기분 방식과 중

가분 방식 중에서 기업이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기분 방식은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0~2%,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외부 효과가 큰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의 20~40%를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서 일반연구개발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세법 개정으로 반도체, 백신, 배터리 등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설해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보다 10%p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일반 사업용 자산 전반을 대상으로 해서 당기 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해서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는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로 우대하여 지원하고 있고 작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세액공제보다 3~4%p 높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기존 10개의 개별 시설별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 의원발의안, 시설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금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핵심전략기술 및 녹색기술에 대한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세법 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 단계를 신설해서 2024년 말까지 종전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공제율로 세액공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산업재해예방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 공제율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시설별 차등을 두지 않고 포괄적·일관적인 지원을 위해서 투자세액공제를 통합·개편한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예방시설 투자를 우대한다 하더라도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주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업장 신설·증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입니다. 이 부분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장을 경영하던 기업들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사업장 증설의 범위가 모호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체계에 배치될 우려가 있고 현재 대부분의 사업용고정자산의 투자는 국내사업장 증설투자로 볼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개정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높이는 효과를 야기하게 되겠습니다.

28쪽 탄소중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홍석준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탄소중립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여 일반 시설투자보다 기본공제율을 우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더라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9쪽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하는 이상현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R&D 비용에 대해서는 자체 R&D 비용과 위탁·공동 R&D 비용에 세액공제를 하고 있지만 서비스 분야 R&D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와 결합된 분야에 대해서만 위탁·공동 R&D 비용에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서비스 분야 R&D 세액공제의 경우에 자체 R&D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해서 과학기술 분야와 결합되지 않은 위탁·공동 R&D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서비스 분야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에 비해서 소요비용 및 불확실성이 낮아서 외부효과 창출을 위해 세제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님과 추경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국가전략사업화시설과 온실가스감축시설 세액공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수소 등의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명시하여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수소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고 온실가스감축시설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도 탄소중립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있고 투자세액공제를 통합·개편한 취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3쪽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김진표 의장님의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최저한세 제도에 있어서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경우라도 법인의 경우에는 17%, 개인의 경우에는 45%의 최저한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외에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일부 감면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서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세액공제 효과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최저한세 적용의 예외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최저한세 제도의 취지상 현행법에 따른 세액공제와 감면은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최저한세 적용 배제를 투자 촉진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D 비용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상향하고자 하는 안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우리 경제에 절실한 전략품목에 대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서 적용대상 기술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평장히 복잡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는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통합투자로 했는데 개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하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공제비율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하고, 크게 그렇게 구분해서 해주시고 각각 관련된 사항들은 나중에 동의·부동의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하여간 종합적으로 정부안대로 심의 의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의견이고요.

우선 첫 번째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은 정부는 찬성하지 않습니

다.

그리고 세액공제비율을 높이는 것도 현재의 공제비율로 충분하다는 건데, 특히 마지막에 R&D 비용 통합투자세액공제율에 대해서 좀 올리게 되면…… 현재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도 사실 최저한세 수준으로, 그러니까 R&D 투자만 한 10% 정도 해도 최저한세 수준 정도로 세액이 감세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액공제 확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병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병도 위원 한병도 위원입니다.

먼저 ‘바’항 국가전략기술 명시 및 수소 추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재부에서도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수소산업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조특법을 검토하겠다고도 했고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도 수소가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된 만큼 이에 발맞춘 세제지원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미국 등 주요국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가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이 IRA를 통해 수소 1kg당 최대 3달러까지 세액공제를 하고 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3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수소산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미국뿐만이 아니고 거의 40여 개국에서 국가수소전략을 발표하면서 수소산업 육성은 이미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산업이 백신·반도체·이차전지에 비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소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지 기재부와 국회가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전략기술은 조세법정주의에 따라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 관련 일부 기술이 이미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수소 생산 등에 관한 기술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수소충전소, 연료전지발전소 등과 같은 수소경제

인프라 조성을 위한 핵심 시설들은 빠져 있어서 종합적인 수소산업 구축 지원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감축시설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낸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폐열 회수 등 검증된 설비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수출 촉진, 에너지 위기에 대응력을 보다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론한 것을 보면 ‘탄소중립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면 일반 투자보다 우대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정안은 산업계의 2030 NDC 달성을 위해 이미 개발이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또 폐열 재활용시설에 대해 지원하자는 것인데 이러한 시설은 신성장·원천기술의 지정을 통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는 탄소중립 기술은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중점인 것입니다. 태양열·태양광·풍력·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과 폐열 재활용시설과 같은 시설은 이미 사용화가 이루어져 있어서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관계부처 협의로 올해도 탄소중립 대상 기술·설비 추가 및 확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추가 지정된 탄소중립 기술도 기술개발 완료 시점이 2030년 이후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류성걸 정리를, 좀 요약해 주십시오.

○한병도 위원 2030년 NDC 달성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올해 추가되는 대상 설비에 산업계가 바로 투자할 수 있는 설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할 수도 있는데요. 2021년에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별도로 분류된 것이고 지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정부가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온실가스감축시설의 지원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한병도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한병도 위원 됐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제가 아주 적절한 시기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특히 국가전략기술이라는 항목을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에서 사실 의결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터리·반도체·백신, 또 저는 그때도 왜 이것만 하느냐, AI라든지 한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소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또 거기 내에서 경중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지금 제안하신 각 안에 보면 숫자가 진짜 다양합니다. 진짜 다양한데, 그 숫자를 하나하나 다 어떤 근거라든지 아니면 에비던스(evidence)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같이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는데 일단 위원님 의견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차관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3개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개별 시설에 대한 건 없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의견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거기다가 산업재해시설이나 사업장 신·증설, 무슨 그린에너지, 이렇게 사업장으로 가면 통합했던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구요.

먼저 장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 이제 심의를 하면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예.

○장혜영 위원 일단은 지금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있는 이 34개 기술로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기업들의 리스트 그리고 얼마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세제지원을 하는 게 곧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으로 긍정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R&D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의 제도가 잘 작동되는지를 먼저 충분히 검토를 하고 확대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당장 이렇게 통합투자로 정리를 한 것이 2020년의 일이고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한 것도 2021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또다시 퍼

센터지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게다가 세수감소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수적인 안이 정부안이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참 복잡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정부안……

일단 문제부터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국가전략 기술 조세지원 도입하고 나서 실적 집계한,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지원하고 나서 그게 어떻게 투자로 연결됐는지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없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 관련되는 자료 주십시오. 빨리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 위원 그것도 가능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이걸 늘릴지 말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게다가 이미 충분하게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들한테 또 이런 혜택을 왜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에 부정적이지만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정부안에 공감대가 크시다고 한다면 한병도 의원님안을 심도 있게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통합투자세액에서 대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지원은 이제 2%를 늘리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없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면 한병도 의원님이 제시하신 것처럼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퍼센티지를 같이 고려하는 것이 그나마 형평성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감사합니다.

신동근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신동근 위원 굉장히 많은 안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각각의 사정이 있고 각각의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을 텐데, 일단 저는 정부안 정도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다만 이 진행 과정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소위원장 류성걸 예, 말씀하세요.

○신동근 위원 이렇게 하면 다 결정 못 하고 넘어가지요. 이 모든 것을 다 재논의하자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요.

그러니까 아예 문제가 있어서 정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정리를 해야 되지, 이렇게 전부 다 하나씩…… 제가 오전부터 했는데 거의 결정 안고다 넘어갔거든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뭐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이 6권을 시작할 때 간사 간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그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신동근 위원 아니,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잘못하면 오해를 할까 봐……

간사 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소위원장 류성걸 저도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신동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간격을 많이 좁혀 주셔야 나중에 간사 간에도 협의가 되지 이렇게 벌려 놓고 어떻게 협의가 됩니까? 안 되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6권이 끝나고 또 중간에 심사를 안 했던 것까지 일독은 전체 할 겁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든지 또는…… 지금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위에서 계속해서 결론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독 자체에 대해서는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구요.

시간적 여유라는 게 지금 본회의 관련된 사항들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간사님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다시 또 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6권을 간사 간에 벌써 다 리뷰를 했는데 리뷰를 하는 몇 시간 동안에 저희가 소위를 안 했잖아요. 어제 저녁인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간사 간에 검토해 갖고 어느 정도 의견을 좁히셨는데 안 한 거랑 똑같이 여기서 다 그대로 하는 것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하고 이런 것은 조금, 장혜영 위원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있으시고 그러면 그 둘의 중간 정도라도 좀 효율성이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어제 저녁은 사실 합의해 볼 수 있는 것은 봐서 좀 늦게라도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고 지금은 이제 그 상황은 이미 지난 상황이라서 그걸 꼭 강조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여러 가지 논의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또 9일 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좁히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논의를 많이 해서 도저히 서로 안 되는 것 또는 나름대로 논의하면 협의가 될 것, 이렇게 좀 좁혀 주셔야 그다음에 뭐 얘기가 되지, 어떤 이견 있으면 모든 걸 다 그냥 이렇게 정리를 안 해 놓으면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영표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소위원장 류성걸** 홍영표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홍영표 위원** 이 6권은 어제 저녁에 민주당에서는 간사들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또 국힘에서도 위임이 되어서 아마 위원장님하고 했고.

그런데 장혜영 위원님이 ‘나는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해서 어제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건 4권이고요.

○**홍영표 위원** 하여튼 추가적으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일이 이걸 다 하시지 말고 6-2에서 이견이 있으신 분, 그러면 장혜영 위원님이 어제 몇 가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 토론하고 추가적으로 여야에서 할 것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위원장님하고 간사들끼리 합의한 그 안으로 그냥 일단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은 전체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도 드렸고 조금 전에도 드렸고 지금 세 번째 드립니다.

그런데 관련되는 사항을 일괄해서 하다 보니까 어제 아주 간단한 일몰 연장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다른 말씀 또 다른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의견이 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대로 하고, 상당히 이견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의견을

전부 다 말씀해 주시고요.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에 관련되는 사항은 또 다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말씀하시지요.

○**장혜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소위원장 류성걸** 예, 말씀하세요.

○**장혜영 위원** 제가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회의의 기본은 법률안을 하나하나 심의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소위가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는 현실론은 인정을 하지만 시간이 없게 된 이유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하신 것은 죄송하지만 양당 교섭단체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없게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없는 시간에서 심의를 충실히 하지 않겠더라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합의의 영역에 넣어 놓으시는 것은 소위의 존재 이유를 자꾸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섭단체에 주어져 있는 국회법상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간사와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결정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실 수 있다고 보지만 길게 다루든 짧게 다루든 법안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루는 것이 국민들한테, 저희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유경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경준 위원** 저는 시간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듯 말 듯해요. 일단 어저께가 마감이었고 정상적인 것으로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밤에 간사 간 소소위를 한 건지, 간사 간 협의를 한 건지에 대해서 저는 들은 바가 없고요. 회의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지금 순서가 소위에서 정상적으로 논의를 하고, 적어도 일회독을 하고 난 뒤에 그래도 안 되면 마지못해 하는 게 소소위이고 간사 간 협의이고 한데 이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있다, 없다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유 위원님, 말씀 다 하셨어요?

○유경준 위원 예.

○소위원장 류성걸 고용진 위원님.

○고용진 위원 유경준 위원님, 우리가 지난번에 기재위에서 조세소위 할 때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져 버려 가지고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제 법정시한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은 부의된 거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예, 올라가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렇게 올라간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한이 지나서 이렇게 다루는 것은 과거처럼 조세소위 거쳐서 기재위 거쳐 가지고 바로 본회의 가는 단계는 막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법안처럼 심사해서 법사위 거쳐서 위원회 대안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경제재정소위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원장이시고, 들어가셔야 되고 6일 날 해야 된다는 거고 7일까지는 두들겨서 넘겨야 법사위 가서…… 지금 의장하고 여야 대표 간에 논의하고 있다지만 12월 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고 우리가 그날 아니면, 그러니까 그날이 현재로는 최후의 날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따지면 시간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예요. 법안을 하나씩 다 다뤄야 된다고 보고 이렇게 할 거면 어제는 왜 간사 간에 하셨나, 결국은 통으로 합의 못 이루셔서 이렇게 됐는데, 제 경험으로는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는 것조차도 못 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6권도 해야 하지요……

○유경준 위원 국회의장이 이것을 여야가 추가 논의하라고 한 겁니까?

○고용진 위원 그게 날짜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이미 지났고……

○유경준 위원 그러니까 지났잖아요.

○고용진 위원 지나서 이제 9일이 최종 시점이 된 거예요. 9일이 최종 시점이면 7일까지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넘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일……

○유경준 위원 위원회안으로 올리면……

○소위원장 류성걸 잠깐만요.

위원님들 간의 상호 토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 진행이니까 발언권 받아서 진행해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님, 계속 말씀하십시오.

○고용진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죽 그냥 다 남기고 가면 다시 간사 회의로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위원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전체가 다 만장일치로 될 확률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아요, 여기에 계신 분이.

그런데 대부분의 위원들이 찬성하시는 것은 가능한 한 합의 수준을 높여 가지고, 자료를 이제 받아 가지고 언제 보고 언제 논의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서 신동근 간사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합의 수준을 높여서, 거기다 다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도 이걸 의결사항이구나라고 아는 게 좀 더 많아져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지금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20분 정도 지났습니다. 회의를 좀 더 하고 좀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운영 관련되는 사항은 간사님과 정회 시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37쪽입니다.

일반 R&D 비용 증가분 계산방법을 명확화하는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직전 4년간 R&D 비용이 없거나 직전 과세연도의 R&D 비용이 직전 4년 연평균 R&D 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기분 방식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직전 4년간 R&D 비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직전 과세연도 R&D 비용에 대해서는 그 위임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39쪽입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의원님안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 그 출자주식의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내용인데 이 기간을 2~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엔젤투자자 지분 인수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을 통해서 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자금 회수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벤처 생태계 조성
기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
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최근 엔젤투자자와 엔젤투자규모가 모두 증가
하고 있고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제도
가 보다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 정부안에 대해서 이
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 저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말씀해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 일몰을 연장한다고 하면 어쨌든
투자전문기업들은 내부의 판단을 하고 나서 투자
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양도
차익이나 이런 이익에다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해
서 추가이익을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
하지 않고 이걸 일부 투자기업들한테만 적용될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비과세 한도 상향 그리고 투
자받은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들에게 돌
아갈 혜택에 대한 조사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44쪽입니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의 소부장 전문기업 등에 공
동출자 시 세액공제와 소부장 관련 외국법인 인
수 시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하
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내
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소부장 전문기업에 대한 공동출자와
이와 관련한 외국법인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적
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대상으로 국
가전략기술 분야를 추가하고 있는데 국가전략기
술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안에 대해서 의견 없으

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장혜영 위원 자료요청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말씀하세요.

○장혜영 위원 지난 2년 동안 실적자료 그리고
공제받은 대상기업들 규모별 분류자료를 받고 싶
고요. 거기에 더해서 대기업에 대비해서 중견·
중소기업들이 대상이 된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
한 세액감면대상 확대 등에 대한 강병원 의원님
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강병원 의원님 안은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고,
정부안은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등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 감면 종료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구개
발특구는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총 5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51쪽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하고자 하는 강병원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란 미래자동차산업과 관
련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함으로써 연구개발, 사
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는 광주광역시와 김해시 등이 조성하기 위한 사
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은 클러스터 입주를 활성화하고 미래자
동차산업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정 지역에 대한 세액감
면은 전국 동일세율 적용의 예외로서 미래자동차
산업클러스터가 동 제도의 취지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미래자동차사업자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서 세액감면을 신설하고 있는데 현행
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를 통해서
도 사업전환 기업에 대해서 종전 사업에서 사용
되던 자산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재창업으로
인정해서 5년간 최대 100% 세액감면이 있기 때
문에 별도로 신설할 필요성은 미흡한 것으로 보

왔습니다.

53쪽 세액감면 종료를 명확화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타당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강병원 의원님 안은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김경호 예.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정부안에 대해서 의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김경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원님들 안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안 중에서 김상훈 의원님 안은 게임물 중에서 홍보목적으로 제작된 영상물을 포함시키는 것이고, 추경호 의원님과 홍익표 의원님, 이용호 의원님과 정부안은 OTT를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영상콘텐츠 범위에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호 의원님 안은 추가적으로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내국인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10% 공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등에 대한 제작비용의 3~10%를 세액공제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규모는 2021년에 170억 원, 22년에는 297억 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7쪽 첫 번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제조업 등과 달리 특정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의 세제지원을 받는 데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제대상을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이상헌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는 영상콘텐츠 외에 디지털만화, 전자출판물 등의 문화콘텐츠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문화콘텐츠에 대해서는 인건비, 재료비 등 R&D 비용에 대해서는 일반R&D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고 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

습니다.

59쪽 OTT 서비스를 공제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 등 거대 미디어·플랫폼 사업자와 중국 등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신규 사업자들의 진출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OTT 이용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OTT 이용률은 2019년 41%에서 21년 81.7%로 코로나 이후 이용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들과의 경쟁력 제고 및 제작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요국의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은 호주가 40%, 미국 35%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들은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OTT를 정의함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님과 이용호 의원안,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규정된 OTT 정의를 따르고 있지만 이용호 의원님과 정부안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로 대상을 더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안은 OTT 콘텐츠 중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VOD형에 한정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실시간 영상형으로 서비스되는 콘텐츠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다음 61쪽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액을 상향하고 영상콘텐츠 제작투자비용에 대한 공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 의원님들 안에 대해서, 최근에 제도 시행 이후 짧은 기간 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제제도에 비해서 이미 공제율이 높습니다. 2020년에 오락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등 적용 장르를 확대했고 2021년에는 공제대상 비용에 국외제작비를 추가한 바 있습니다.

62쪽 게임 홍보영상물을 공제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김상훈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게임물 중 홍보목적으로 제작된 영상물은 차세대 핵심 문화산업인 게임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게임 제작에는 예고편, 홍보물 등 영상콘텐츠 제작이 필수적이며 방송, 영화산업과 유사하게 인력·기술 등에 많은 자본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별도의 세제지원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홍보영상 제작은 게임산업 이외에 다른

모든 업종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게임물 홍보영상만 지원할 경우에 타 산업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정부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지만 정부안대로 OTT만 추가를 하고요. 일몰 연장하는 것에만 정부는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유경준 위원 잠깐 질문 하나만 하고요.

○소위원장 류성걸 예, 유경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경준 위원 작년에 OTT 포함시켜서 세액공제하려다가 OTT 정의가 불분명해 가지고 정의를 확실히 하고 난 뒤에 하자 해서 미루어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정부안을 이렇게 등급분류 후에 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까?

○소위원장 류성걸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OTT 범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뒤에 정정훈 정책관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정정훈 총괄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법률이 규정됨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가져온 것이고요.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을 살펴보니깐 단순하게 인터넷 강사 등이거나 아니면 개인이 그냥 자기가 직접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빼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가 있는, 원래 취지대로 맞게 만들기 위해서 추가요건을 단 것입니다.

○유경준 위원 작년에는 전기통신법에 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전기통신법에 규정이 돼서 그걸 일부 보완해서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정정훈 예, 그렇습니다.

○유경준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신동근 위원님.

○신동근 위원 대체적으로 의원님들 각기 공제율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부총리로 계시는 추경호 장관님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공제율을 좀 높이자는 안들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영상콘텐츠 제작 관계자들이라든지 이런 요구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부존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진행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이라도 어떻게 절충안을 만들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공제율은 지금 다른 세액공제 제도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2017년 이후에 공제대상이 지속 확대되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공제율 향상은 앞으로 제도 운영성과라든지 세수 영향 이런 것을 평가해 보고……

저희가 아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계속, 올해는 OTT 콘텐츠 제작비가 추가됐고 작년에는 국외제작비도 포함이 됐거든요. 제도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공제율이 다른 공제율에 비해서 더 높습니다. 일반 통합투자세액공제보다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운영성과를 봤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운영성과를 보면서 하되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앞으로 긍정적으로 또는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전제하에서 정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근로소득 중대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한 의원님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 중대세제의 요건에서 정부안은 대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대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에서는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정부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으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유동수 위원 예.

○소위원장 류성걸 유동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대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상당한 수준에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을 상대적으로 임금인상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했습니다.

○유동수 위원 어쨌든 대기업에 다녀도 월의 차이에 의해서 좀 적게 받지만 혜택을 받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측면이, 요즘 그런 현상이 꽤 많이 보이거든요. 임금과 물가의 스파이럴(spiral)을 보인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주도하는 것이 사실 대기업들입니다. 대기업이 잉여가 많이 나다 보니까 중소기업하고 점점 그 갭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거기에다 정부가 추가적인 세제혜택까지 줘서 대기업이 임금을 더 올리도록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정부안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7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제도를 통합·단순화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로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모든 기업으로서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되겠습니다.

기본공제는 고용증가 인원당 세액공제액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수도권은 850만 원, 지방은 950만 원, 중견기업은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45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대기업에는 기본공제가 적용되

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대 세액공제로는 청년정규직이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했을 경우 수도권 중소기업은 1450만 원, 지방 중소기업은 1550만 원이 적용되고 중견기업은 800만 원, 대기업은 40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와 우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은 3년, 대기업은 2년간만 지원되고 2년 이내 상시근로자가 줄어든 경우에는 공제된 금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자와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공제가 적용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각종 공제가 다수 존재해서 실제 적용대상인지를 구별하기 어렵고 복잡한 방식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단순화한 것으로서 기업의 고용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음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과 관련해서 정부안 통합하는 것과 관계없이 기존에 있는 안에 별도의……

○소위원장 류성걸 그건 됐습니다, 일단 정부안 검토를 하면 이건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정부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정부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기본공제도 확대를 했고요. 청년의 범위도 29세에서 34세로 확대를 했고 경단녀도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했고, 추가공제 나머지 부분들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제를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유경준 위원 경력단절여성을 추가고용하는 데 대해서 세액공제하는 데는 반대가 없지만, 작년에 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걸 통합해서 한다는 것도 크게 반대할 사항은 없지만 상시근로자라는 의미가 상용과 임시근로자를 합한 말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 관련법에서 수정을 하기로 하고 통과시켜 준 것도 있는데 또 상시로 들고 오시면, 상용과 임시로 하면 아무나 다……

그러니까 상용은 그래도 나은 근로자지만 정규직도 아니고 임시근로자를 추가고용하면 또 세액공제를 해 주겠다는 건데 이거는 취지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작년에 정리하기로 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오면 정규직 해고하고

임시직·비정규직 추가고용을 했을 때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 좀 해 오세요.

○소위원장 류성걸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정정훈 조세정책관입니다.

위원님 말씀의 전체적인 취지에는 저희들이 공감하는데요. 고민스러운 지점은 이게 증가할 때는 공제를 해 주는데 그 다음연도에 다시 줄어들거나 추가적인 증가가 없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도로 토해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제일 큰 부분인 잠깐 고용해 가지고 세금혜택받고 다시 고용을 해고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길게 돼 있는 감면기간 중에 1년밖에 혜택을 못 받거나 오히려 토해 내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제어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경준 위원 아니, 그게 그런 게 아니고, 한번만 해서 그런 식으로 걸러낼 수 있으면 다행인데 계속해 보세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반반이 있었어. 그러면 한 해는 정규직 10% 해고시키고 비정규직 11% 추가고용하고 다음에도 또 10% 해고시키고 11% 추가고용하고 하면 계속 세액공제는 증가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니까. 악용을 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악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동의해서 상시근로자 용어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기로 했던 기억인데 또 이렇게 오시면 이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위원님, 올해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한 5개 있는 것을 통합해서 중복지원 문제 그다음에 제도 전반적으로 체계성이 없는 문제 또 일부 제도는 활용도도 저조하고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영세·중소기업에도……

○유경준 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한 1년 지나면 다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와 가지고 또 그 소리 하고 그러니까. 정리 좀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만들었으니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개선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제도부터 먼저 만들자는 그

런……

유동수 위원님 일단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74쪽에 예정처하고 정부하고 세수효과가 많이 차이난데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소위원장 류성걸 표 설명해 주십시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세해, 조세감면을 측정할 때는 지금 현재의 고용이 변하지 않는다, 현재 수준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세액감면규모를 측정하는 거고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약간 동태적인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고용이 더 늘어난다든지 하면 그거에 따른 감면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측정을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구체적인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유동수 위원님께 말씀드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경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고 또 작년에 지적이 됐는데 똑같은 취지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다만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제도 자체의 틀을 만들어 가는 사항이니까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유경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상시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가 포함한다는 그 개념규정 관련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시도록 하고 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대해서 잠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75쪽은 자동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78쪽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과세특례입니다. 63조에 대해서는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다음에 63조의2에 대해서는 본사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세액감면이 되겠습니다.

개정안들은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감면율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배준영 의원님과 정부안의 경우에는 3년 연장하고 정부안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 이전과 본사 이전하는 경우에 세액감면대상으로서 성장추진지역 등의

위기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추가하여 감면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세감면규모는 공장 이전의 경우에는 2021년에 2052억 원, 본사 이전의 경우에는 2021년에 3032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 지방이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 분산을 하기 위해서 실효적인 세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특례 심층평가결과를 보면 동 조세특례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88쪽 신·재생에너지발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특례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윤재갑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수도권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이 해당 공장을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받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산업위 소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기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하고자 하는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정부안은 수도권과 멀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한 감면혜택을 대폭 상향해서 낙후지역 이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2그룹으로 구분된 지원방식을 3그룹 지원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2그룹 지원방식은 원칙적으로 7년간 100%, 3년간 50%를 적용하되 광역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대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간 100%, 2년간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대해서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이전 시 10년간 100%, 2년간 50%를 추가하여 적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92쪽 수도권 밖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김희재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에 지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7년간 100%, 3년간 50%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특례조항들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억제의 취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감

안할 때 지사를 지방에 신설하는 경우까지 세액 감면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3쪽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축소하고 대신 지방고용인원에 비례해서 감면을 추가하고자 하는 김두관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세액감면율에 대해 하향 조정하면서 지방이전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상시지방근로자 1명당 1500만 원씩 추가감면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고용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경우에 일부 기업이 과도하게 법인세 혜택을 부여받고 있어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들이 여전히 수도권 및 대도시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감면율 하향 조정 없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도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상향하고자 하는 이병훈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현재 7년간 100%, 3년간 50%를 감면해 주는 동 제도의 감면율은 다른 세액감면제도와 비교 시 높은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아까 감사원 감사결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문제가 지적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여러 가지 안이 제안이 되었는데 정부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위기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감면을 규정한 정부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배준영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여기 배준영 위원님 안이 나와 있어서.

○홍영표 위원 제가 할까요?

○소위원장 류성걸 예, 홍영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홍영표 위원**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방이전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사실 이렇게 많은 감세정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래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은 사실 인력의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도권 어느 선 이하로 갔을 때는 유능한 인력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홍영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줘 가면서 노력을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법인세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 고집하지 마시라고 내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지사 신설하는 법인에까지 세액감면하는 것은 취지가 안 맞다는 말씀도 아까 하셨고 해서, 정부안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 정부안이 일면 상당히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여덟 차례씩 일몰을 계속 연장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과세특례를 적용해 줘도 불구하고 지금 수도권 집중현상은 계속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부가 좀 더 실효성을 높이는, 지방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위기지역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본질적으로 강구해야 되는데 계속 지원하면 뭐 합니까, 계속 더 심화되는데?

그리고 균특회계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통계를 보니까 수도권에 더 많은, 지역균형발전회계 하는 데 나가는 나가는 수도권에 오히려 더 많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통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런 방안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발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안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배준영 의원님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 배준영 의

원님 안은 세액공제 요건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을 ‘100분의 25 이상일 것’으로 완화하고 공제되는 금액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수출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1%’를 ‘3%’로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운법에 따라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즉 국적 컨테이너 선사를 통해서 해상운송하면서 지출한 해상운송비용 중 40% 이상이고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1%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외항정기화물운송비용의 3%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는 2019년 세법 개정 때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를 신설하였고 우리나라에 등록된 국적 컨테이너 선사와 화주기업 간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 9월 기준으로 12개의 화주기업과 7개의 선사기업이 우수선화주기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조세지출규모는 2021년에 7억 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적선사 지원을 통해서 공급망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운송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인증요건 완화와 공제율 상향에 대해서는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의 40% 이상 조건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노력만으로는 충족이 어렵고 수출과 수입 운송주선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40% 이상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최소 충족치 40%를 상회하는 우수화주는 12개 중에서 5개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수화주기업이 현실적으로 동 특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물동량 기준으로 책정된 현행 기준치 40%를 비용단위로 환산한 25%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국적선사를 선택하는 유인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감면 규모인 지출비용의 1%를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동 제도의 취지는 화주기업으로 하여금 국적 컨테이너 선사를 이용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요건으로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정부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국적선사를 많이 활용하도록 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준영 위원 국적선사가 꽤 부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주기업으로 하여금 우리 국적선사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해운산업을 살리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부와 업계의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여기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40% 이상의 외항정기화물 운송사업자 이용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에 적용되는 기업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인증요건을 완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요건에 맞는 기업과 안 맞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정도의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95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그냥 준다고 계속 주는 게 아니고요. 요건을 보시면 둘째 조건에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의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할 것, 그러니까 계속 증가해야 인센티브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보면 단순히 이렇게 연장뿐만 아니라 이런 조건을 완화시키고 또 공제액도 상향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선사 그리고 해운업계가 활로를 찾아보겠다, 이런 것에 정부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정부안 일단 어떻게……

○배준영 위원 정부가 하는 것은 동의하면서 제안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안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100쪽입니다.

개정안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25년 말로 3년간 연장하면서 지급배당금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보다 큰 경우 그 초과 배당액을 최대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투자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절차를 통해 배분하는 도관 성격의 법인으로서 법인세법상 유동화 전문회사 등과 소득세법상 공동사업 방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법인단계에서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적용시킬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초과배당액 이월공제와 관련해서는 초과배당액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5년간 이월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현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금액을 초과하여 배당한 경우에 이를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서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배당액을 공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정 취지에 반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개정안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과 일몰 종료하는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사항은 이견이 있으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113쪽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및 창업 인정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항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118쪽 창업자금 및 영농자녀농지 등 증여세 과세특례 자진신고·납부 근거를

마련하는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차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것은 절차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절차적인 사항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항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면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원님 안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128쪽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18항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19항.

○전문위원 김경호 134쪽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거나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훈 의원님 안은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자는 내용이고 고용진 의원님과 정부안은 3년 연장안이고, 윤영석 의원님 안은 영구적으로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2021년 기준으로 전체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비중은 99.8%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대부분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고 간이과세자 중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납부면제자 비중이 97.5%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르면 택시사업자는 안전 등을 이유로 7~9년 주기로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데 택시의 다수 차량인 중형택시는 7년 정도 사용하고 대폐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차량교체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감안해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2021년 기준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97.7%는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으로 소비자가 납부한 택시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정부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저도 별도 안을 냈습니다마는 정부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안으로 잠정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항은 보류하고 21항 설명해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 보류한다고요?

○소위원장 류성걸 예.

○고용진 위원 보류하고 언제 다릅니까?

○소위원장 류성걸 나중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고용진 위원 나중에 심도 있게 언제 해요? 심도 있게 다를 시간이 있어요?

아니, 그런 보류 중에서도 의원들이 발의한 안으로서 정부 측하고 논의할……

○소위원장 류성걸 잠깐만요, 20항은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138쪽입니다.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고용진 의원님과 윤영석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과세자인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즉 법인택시사업자에 대해서는 택시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경감하고 있고 전단계 매입세액공제 원칙에 따라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자동차 생산·판매업자 모두 전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생산·판매하는 자가 면제대상인 택시용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없으므로 전단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에 대한 택시용 자동차 판매를 기피하게 돼서 안정적인 택시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판매업자가 개인택시용 자동차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택시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여 소비자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동차 판매업자가 개인택시 간이과세자에게 택시용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 재료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원가구조가 악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운송수단으로서 택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통해 원활한 택시 공급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수의 면세품목은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이익감소분 전액 또는 일부를 소비자가격에 전가해서 보완할 수 있지만 개인택시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법인택시용 자동차와 가격을 차별화하게 되면 일물일가의 원칙에 위배되고 택시 출고가격을 현실화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이를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현재 조특법에 따라서 농림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를 공급하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부가세 면세 대상인 재화·용역 공급의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기본 원리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가세가 면세되는 다른 품목과의 과세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정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우선 현재 부가세 면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입세액공제를 한 번 더 하는 건 이중으로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셨는데 면세유 공급에 대해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영세율은 수출이라든가 농어업, 국방 이런 쪽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 그 이외의 것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고용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고용진 위원 저랑 윤영석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안을 냈는데, 지금 차관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특수성이 좀 생겨 있잖아요. 개인택시랑 법인택시에 차별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고용진 위원 말씀하신 대로 부가세 면세대상인 상품을 공급할 경우에는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는 게 일반 원칙이지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기업이 이윤 감소의 일부를 판매가격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일반인 것 맞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고용진 위원 그렇게 소비자가격을 올려서 손해를 만회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택시다 보니까 개인택시 가격을 올리면 법인택시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발이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택시라는 것이 공공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제조사가 일정 정도 자기들이 부담을 해 온 거지요, 부담을.

그런데 이 구조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이제 가능하냐? 어려우면 개인택시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 차종을 계속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게 돼서 예컨대 단종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단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문제들이 또 발생한다는 말이지요. 차량이 고급화되면 택시가격이 올라서 결국은 이런 택시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개인택시들이 어려워질 수 있고 또 지금 가장 대중적인 택시 모델이 아마 소나타인 모양인데요. 거기와 관련된 여러 업체, 유관 업체들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칙으로만 얘기하면 논의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경우는 택시사업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자동차업체가 다 떠맡고 지금까지 버텨 왔는데 이제 어렵다고 할 때 정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이러한 차별적 요소를 나름대로 지원을 해서 정리를 좀 해 줄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원론만 얘기하실 것 같으면 이런 법안을 내지도 않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택시에 대해서 자동차 제조업자가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을 결국은 세제라는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재정보조를 해주는 형태가 되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을 하게 되면.

그런데 현재 개인택시나 이런 것들이 과잉공급이 되면서도 운전자들이 굉장히 고령화돼서 감차를 하려고 해도 감차가 잘 되지 않고 또 밤에는 제대로 택시를 잡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서 한쪽으로는 감차를 하려고 정부가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으로는 재정보조를 통해서 개인택시의 차량구입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정부정책상 언밸런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세제혜택으로 해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고용진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최근에 택시난이 있고 그랬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고용진 위원** 그러한 현상은 감차정책하고는 또 반대되는 현상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고령화되기 때문에 저녁에는 안 나오는 거거든요.

○**고용진 위원** 그리고 개인택시로 면세 전환된 게 언제, 얼마쯤 돼요? 국가정책 변화로 그렇게 된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2013년에 됐다고 합니다.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에서 면세 전환으로 정책을 바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지되어 오다가 지금은 여러 상황 변화로 어려워져서 더 이상 생산하기가 힘들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서라도 정부정책 변화로 인해서 차별이 생긴 것을 정부가 해소해 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금 한없이 우리가 논쟁할 수 없으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예, 실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이 문제는 면세를 원래 최종소비자한테 해 줘야 되는데 개인택시운

송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이고요.

○**고용진 위원** 알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그렇기 때문에 택시 생산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아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것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런 방식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입세액공제를 해 주게 되면 이것은 영세율제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이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했고, 그렇지만 이 방식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연구를 하고 또 업계 얘기도 들어 보고 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런 프로세스를 시행할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이게 세제실 차원에서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국토부하고 산업부하고 다 협의해서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제가 들어 보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그런데 당장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택시 문제는 난마와 같이 얽힌 문제들이 많아서 조금 더 저희가 심도 있게 연구도 하고 충분히 의견도 들어 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게 굉장히 중장기로 자꾸 넘어가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조금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용진 위원** 조금 더 구체화된 얘기를 가지고 마지막 최종 결정할 때 논의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유경준 위원** 관련해서 제가 알듯 말듯 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한테 공급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이런 말인데 간이과세자는 결과물이잖아요, 현재 8000만 원 이하로 돼 가지고. 그러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 8000만 원 이하가 간이과세자예요, 아니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전부 다 간이과세자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8000만 원 이하가

간이과세자입니다.

○**유경준 위원** 8000만 원 이하지요? 그러면 결과물인데 이것을 사전적으로 간이과세자한테 공급한다 그러면 전년도 8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것 같고. 그러면 그 뒤에 개인이 자기 차를 매입해 가지고 8000만 원 이상 될 수도 있다는 소리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원인과 결과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점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적어도 개인택시사업을 하면 연간 8000만 원 이하 매출액이 나온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전문위원 김경호** 8000만 원 이상 되는 개인택시사업자가 283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자 16만 명 중에서.

○**유경준 위원**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러면 한 달에 개인택시사업자가, 수익이 8000만 원이 아니고 매출액이 80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이해가 안 되니까 동의하기도 그렇고……

○**소위원장 류성걸** 설명이 안 되시나요? 자료가 없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할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병도 위원** 위원장님, 저도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류성걸** 예, 한병도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병도 위원** 이미 다 토론은 하셨고, 다행히 정부에서 어떤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다양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 다른 특별한 말씀을 드릴 것은 없는데요.

이 내용이, 고용진 의원안이나 윤영석 의원안이 당초 면세 전환 취지를 살리면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중재안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말씀만 첨언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145쪽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 또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올해 말까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안은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영구적으로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김상훈 의원님 같은 경우도 연장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김기현 의원님과 임오경 의원님과 안규백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일몰기한을 폐지하면서 영구 면제하면서 이것을 부가가치세법으로 이관 규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규백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가 되겠습니다—포함해서 부가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현재 조세법 체계상 기초생활필수품과 같은 영구면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그리고 한시적 면세대상은 조특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김기현 의원안과 임오경 의원안과 같이 기저귀에 대한 영구면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부가세법에 규정하는 것이 우리 조세법 체계에 부합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아보호용 장구, 즉 유아용 카시트를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안규백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유아용 카시트 등 유아보호용 장구의 착용이 의무적이라는 점에서 부가세 면제의 필요성이 있겠지만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저소득가구는 면세혜택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영구히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정부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구히 면제하니까 부가세법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냐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예,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특법에 하는 것보다는, 영구 삭제하게 되면 부가세법으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하시는 게…… 여기서 정리를 하지요.

○**기획재정부재난소비세정책관 조만희** 재난소비세심의관입니다.

이것은 조특법에 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부가세법에 미가공식료품, 분유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것하고 조금 헛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면서,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면 사후관리를 정부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전문위원님 어떠세요?

○전문위원 김경호 미가공 분유 같은 경우 그건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현재 영구 면세되는 생리대 같은 경우도 부가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나중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안으로 하되 조특법으로 갈지 부가세법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 검토를 하십시오.

정부안으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146쪽입니다.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난방용 또는 농·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이양수 의원님 안은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고 정부안은 일몰 종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재펠릿은 톱밥과 같은 작은 알갱이 형태로 분쇄한 후 고온으로 압축하여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친환경 바이오 연료가 되겠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이나 유엔 정부간협약체에서도 탄소배출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은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자원이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최근 3년간 감면실적과 지원효과가 미미해서 기재부는 동 제도에 대한 정비계획에 따라 일몰시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3년간 목재펠릿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임업인 지원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여 등을 위해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연간 목재펠릿의 자급률이 2016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농·임업용 이용량 역시 2019년을 기점

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자원인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세 면세 종료는 세수증대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탄소중립정책과 전 세계적 추세에 배치되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청 의견 들어 봤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산림청은 일몰 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동수 위원 이양수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신동근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신동근 위원 지금 기재부는 이게 거의 실적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신동근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은 이게 증가 추세에 있고 친환경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소수가 되더라도 갑자기 일몰시켜 버리면 또 피해를 보는 업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이양수 의원님 안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이양수 의원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2년 연장하고 봐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년 괜찮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년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153쪽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에 따라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류성걸 예,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157쪽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한도 상향입니다.

현재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차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씩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님은 감면한도를 3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있고 정부는 감면한도 상향 없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부는 당초 2022년부터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에서 제외할 계획이었지만 금년 2월에 발표한 방안에 따라서 2025년부터 친환경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의 경우에 개별소비세 감면 없이도 일반차량과 경쟁이 가능하고 환경적 측면의 장점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공해차로의 적극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정부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하이브리드에 관련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지원이 안 돼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으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162쪽 유류세 환급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특법에서는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차 및 승합차—소유주에게 경차에 부과된 유류세를 내년 말까지 연간 30만 원 한도로 환급해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안은 유류세 환급대상을 현행 승용차·승합차 외에 화물차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대상과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안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

이 유류세 환급대상과 요건을 모두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현재 법률에 규정돼 있는 내용조차 오히려 시행령으로 위임하기 때문에 약간 후퇴하는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승용차·승합차·화물차를 유류세 환급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점과 배달업체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유류세 환급대상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허영 의원님 안은 주로 영세상인이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유류세를 환급해 주고자 하는 내용인데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준영 위원 차관님, 이륜차에 대한 정부의 의견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이륜차는 추가를 하더라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이륜차를 포함하더라도 허용을 하시겠다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위임 근거를 좀 더 구체화하라는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안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시고……

○소위원장 류성걸 너무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문구를 만들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예.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그 문구를 보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방기선 전문위원이 대표로……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전문위원이 정부안에 대한 수정이랄까, 시행령에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을 해서 돌려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 전문위원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이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관

리법에 따라서 건인차만 빠지고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승용차·승합차·이륜차·화물자동차 그리고 1000cc 미만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류성걸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니까 좋다 이거지요?

○전문위원 김경호 예.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정부안에 대한 수정 의견으로 해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167쪽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일몰 종료하는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즉 중유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라서 정제공정 원료용으로 중유를 수입·구매하더라도 중유로 간주하여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원유와 중유를 투입하여 정제공정을 거치면 LPG, 휘발유 등의 석유제품이 생산되는데 생산된 석유제품 중에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LPG, 휘발유, 경유 등 과세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중유에 대해서는 이미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환급되지만 나프타, 아스팔트, 항공유 등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중유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중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내수용 나프타, 아스팔트, 항공유 생산에 투입되는 중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례에 따라 해당 중유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겠습니다.

동 특례제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유업계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조세특례의 도입 취지가 달성되었으므로 적용기한을 종료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동 특례의 대상은 정유 4사에 한정되었는데 정유 4사는 2020년 총 4조 66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에 2021년도에는 총 5조 3372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상이익을 월등히 넘어서는 초과이익을 향유하는 석유업자 등에 대해서 한시적 초과이익세인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

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정부안 동의합니다.

○양경숙 위원 일몰에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1조의6은 삭제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173쪽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를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는 면세물품 판매와 구매금액이 1인당 600달러, 연 6회로 제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일영 의원님은 1000달러, 정부안은 800달러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80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근 위원 정부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안에 대해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6권까지 다 마쳤고요. 본래 7-1권을 오늘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내일 회의를 개회해서 내일까지는 7-1권과 그리고 이제까지 하면서 중간에 심사를 하지 않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일 전체적으로 일독을 다 마치려고 합니다.

○김상훈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류성걸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훈 위원 내일 아마 7-1권을 하기로 협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일회독을 못 했던 것을 다시 일회독을 하는 게 아니고 그간에 계속 보류·재논의하겠다고 했던 그 안건들에 대해 가지고 소소위 형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님과 간사님과 또 정부 측, 전문위원들이 좀 정리를 해서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7-1을 마치고 그다음 또 소위가 아니고 소소위 형식으로 해서 좀 정리하는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류성걸 제가 그 부분의 운영 관련되어서……

○고용진 위원 위원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소위원장 류성걸 예, 고용진 위원님.

○고용진 위원 그러면 7-1권을 내일 하지 않습니까? 오전에 회의할 거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예, 오전 10시에……

○고용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쪽 넘어오면서 정부 예산안 관련 중심으로 해 오고 빠졌던 것들은 언제 하시는 걸로…… 그것도 해야 되거든요.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1권을 하고 그전에 예산과 직접적 관련 있는 항목들을 먼저 하면서 빠졌던 것, 누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하게 되면 전체 일독이 끝나는 겁니다.

○고용진 위원 그것도 내일까지 다 할 계획이신 거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내일까지 다 마치고, 조금 전에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관련되는 사항은 행정실에서 아마 정리를 할 거예요. 잠정 의결되어 있는 것, 보류, 완전히 안 되는 것, 이런 형태로 아마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일독을 하게 되면 그 이후의 일정에 관련되어서는 신동근 간사님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체 국회 일정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해서 국회 본회의 이틀 전에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근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신동근 위원 내일까지 어쨌든 일독을 하는 걸로 하고요.

김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좁혀서 하는 부분은, 그걸 또 소소위라는 표현을 쓰면—일부 기자들이 그렇게 쓰시더라고—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분이 계셔서 형식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어쨌든 ‘간사 간 협의’ 이렇게 해서 플러스 알파로 하면 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간사 간 심도 있는 협의를,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합의안을 도출해서 본회의 처리기한까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고용진	김상훈	류성걸	배준영
신동근	양경숙	유경준	유동수
장혜영	진선미	한병도	홍영표

○출장 위원(1인)

조해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방기선
세제실장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	정정훈
소득법인세정책관	이용주
재산소비세정책관	조만희
관세정책관	김재신
조세및고용보협	김건영
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